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 일시 |

2026. 4. 22.(수) 13:30~17:3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57-1동) 113호

| 주최 |



법무부



서울대학교

| 주관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축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03
-----------	-----------	----

기조세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07
-------------	----------------------------	----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좌장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발제 ①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33
---------------------------	----

법무부 김민경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발제 ②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43
-----------------------	----

법무부 이향숙 체류관리과장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55
-------------------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종관 교수	69
-------------------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캐스퍼 클라센 선임연구원	75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말라 석사과정생	81
-----------------------	----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좌장 손인주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발제 ①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 고도화	87
------------------------	----

법무부 강영우 이민통합과장

발제 ②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99
--------------------	----

법무부 이재형 외국인정책과장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창용 교수	107
--------------------	-----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	
---------------------	--

(주) 코레아니시마 카를로스 고리토 대표	113
------------------------	-----

이민정책연구원 김화연 부연구위원	119
-------------------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축사

법무부 장관 정성호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싱크탱크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출입국·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힘써주신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강원택 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분들과, 평소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 자리에 참여해 주신 서울대 재학생, 유학생 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소위 ‘인구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9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동포가 체류하고 있으며, 올해 300만 명을 넘어 인구의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민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농·어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간 우리는 경제·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출입국·비자제도 개선 등 나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일자리 등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저숙련·저기술의 외국인노동자 도입, 외국인 활용과 공존에 대한 국민 설득 미흡,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미비 등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동포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포용 그리고 국가전략으로서 이민정책 활용 등 미래의 축소사회를 맞아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저성장·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경직된 대응 방식에 벗어나 출입국·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어떤” 이민자를, “어떻게” 유입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해외 고급인재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그리고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여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하여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이민자 사회통합에 쓰일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추진 등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순히 인력을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보호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균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사회적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가감 없는 의견과 조언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무부도 출입국·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 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기조세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인재유치·지역발전·포용사회를 위한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2026. 3.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 서

I. 추진 배경

II. 그간 정책의 한계

III.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패러다임 전환

IV.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비전

V. 핵심 추진과제

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 1) 경제에 보탬이 되는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4.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5.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VI. 추진기반(조직·재원) 마련

<참고>

1. 외국인 유입과 정책 전개과정
2. 주요 통계

I. 추진 배경

□ '저성장 시대,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설계 필요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동포 포함)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 새로운 요구가 제기

대통령 제80차 UN 총회 기조연설('25.9.2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주도해 갈 것

- '26년 체류외국인 300만('25. 12월 278만명) 돌파, 인구감소 충격 가시화*가 예상되는 2030년 진입 이전에 "지금"이 미래전략 지도를 마련할 골든타임

* 생산연령인구가 '20년 3,730만명에서 '30년 3,417만명으로 약 313만명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30년대 중반 이후 고령인구 증가생산인구 감소로 상승(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포커스」 '24년 겨울호)

⇒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중장기 이민정책 전략**을 **"지금"** 제시

II. 그간 정책의 한계

◇ 그간 경제·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비자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이민정책 역할 부족**

- (울산 조선업 인력난) 사용자는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을 싼값에 직도입을 주장, 노조나 주민들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임금하락 본국 송금(소비 저조) 등을 이유로 반대

※ "외국인 50% 안돼...조선업종·노조연대, 울산 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25. 8. 26. 뉴시스), "조선업 호황인데 지역은 불화...내국인 채용 확대·이주노동자 쿼터 축소"('25. 12. 22 울산매일)

⇒ **"어느 국가에서, 몇 명을, 어떤 임금수준으로 유치하여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민정책의 역할 부각

□ 단기적 관점에서 민원해소성 위주 정책으로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의 한계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경제·산업계의 요구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저숙련 위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 ㄱ (저숙련인력 체류) ('07) 211,091명 → ('17) 295,196명 → ('25. 12월) 403,995명 ↗ 대폭 증가

ㄴ (전문인력 체류) ('07) 33,502명 → ('17) 45,685명 → ('25. 12월) 105,165명 ↗ 소폭 증가

- 중앙부처가 독점적으로 비자발급 대상·요건을 결정함에 따라 현장 수요자인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부족
- 현재의 조직·인프라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적정 이민자 도입에 대한 미래전략 지도(map)를 설계하기에 한계

□ 외국인 활용과 공존에 대한 국민설득·이해 증진 정책 미흡

-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공급'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관점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한계
- 국민이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 및 이민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反이민정서 확대 우려*

* 이민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 여론(찬성 46%, 반대 44%) 비등('24. 한국리서치)

□ 통합 거버넌스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

- 우수인재 유치는 비자제도 개선 이외에도 기업문화 개선, 세제, 투자 환경, 교육 등 종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관련 정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기술인력 유입은 저조

Ⅲ.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 국내 이민정책 환경

- (외국인력 수요증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력부족 체감 심화 및 정주 적합성이 높은 외국인력 활용수요 증대로 취업비자 적용대상 확대

* '25년 상반기 노동력 부족인원 468,633명('25.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 고용이 어렵기 때문"(90.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건비 절감"은 3.2%에 불과('23.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최소 인력 부족 규모* 예측('30년 기준)】

(단위: 명)

구 분	전문직	準전문직	숙련기능직	비전문직	합 계
전 체 산 업	166,700	511,900	92,000	354,500	1,125,100
농 · 어 업	-	-	-	61,900	61,900
제 조 업	24,800	100,300	48,600	79,700	253,400
사회복지업	25,300	97,400	-	99,500	222,200
정보통신업	30,600	25,900	5,200	8,500	70,200

* '24년 법무부 연구용역(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중 업종별 부족인력 규모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의 규모

- (사회통합 요구증대) 이민자 수 급증, 이민 2세대 및 가족 단위 이주 증가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및 사회통합 필요성 대두
※ 체류외국인 ('07) 107만 → ('25. 12) 278만 / 동반(F-3) ('20) 20,050명 → ('25. 12) 75,684명
- (反이민정서 확산) 정주이민 증가에 따라 복지 부담·일자리 침해·문화 갈등 우려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도 강화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 확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24, 문체부) : 찬성 48% vs. 반대 52%

□ 글로벌 이민정책 환경

- (인재경쟁) 전세계적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우수인재(중간기술* 인력 포함) 수요 증가로 한·중·일 포함 글로벌 필수인재 쟁탈전 격화
* 대만,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중간기술 이민 단계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
- (이민의 보수화) 난민·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反이민정서 확산으로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이 보수화되는 추세
※ '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 → 사회 갈등 심화에 따라 극우 정당 득세
- (한국 매력도 향상) 국제위상 강화 및 한류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문화적 매력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부상
* '24년 문화 영향력 부문 국가순위 7위(U.S. News & World Report)

2 새로운 관점 제시

- '성장시대'에 맞게 설계된 정책의 목표, 활용방안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접근 필요

(과거) 성장시대	vs	(미래) 축소사회
3D 업종 단기노동력 공급자 (임시 체류자)	외국인을 보는 관점	소비·부가가치 창출하는 국가성장 자산(지역주민)
해외에서 직도입	외국인 유입 방식	국내 대학을 통해 학력·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우선 활용
국가지원과 외국인 선택	외국인의 사회통합	국가가 지원하되, 외국인의 책임성 강화
중앙정부·국내 이슈, 정책 설계 자체에 중점	이민정책을 보는 관점	중앙-지방·국제 이슈와 연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해석과 인식 강조
공무원이 일하기 편한 방식	제도 운영방식	기업인 등이 일하기 편한 방식

□ 이민정책의 국가전략

○ “어떤 이민자를 유입해야 하는가?”

- (전략1) 국가단위 정책에서 지역단위 정책으로 전환하여 젊고 우수한 “지역 정주형 경제활동인구” 유치
- (전략2) 지역연계형 관광 비자 개선으로 지역 소비인구 확충
- (전략3) ① 자동화가 어렵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돌봄 등)은 집중 양성·유치, ②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자동화 추이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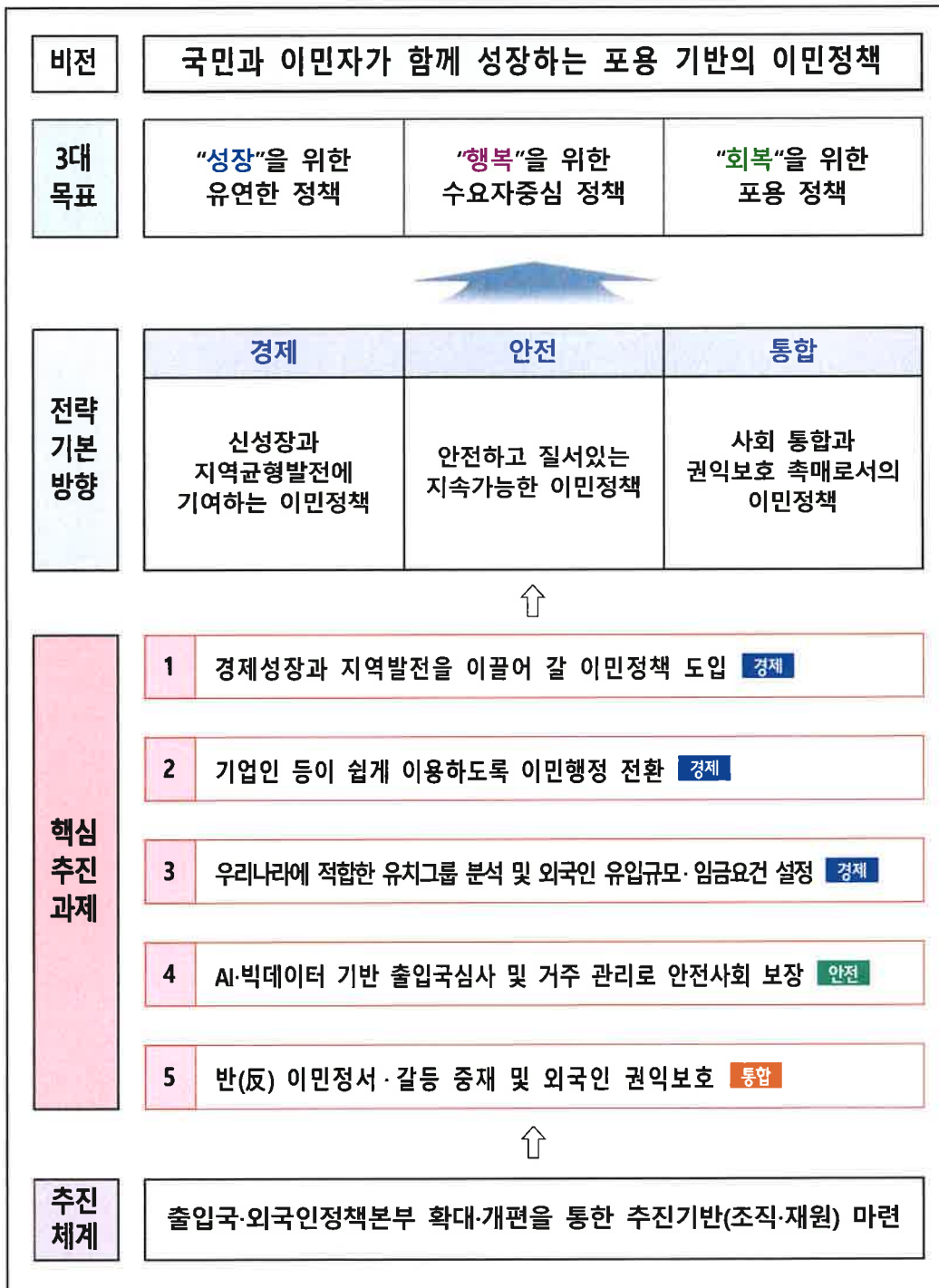
○ “이민자를 어떻게 유입해야 하는가?”

- (전략1)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 통합력’이 높은 유치그룹 분석·평가 및 유입규모 산정(경제적 효과 측정)
 - ※ 연간 외국인 유입 규모를 산출하고 비자발급 요건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이민자 유입의 속도와 규모 조절 가능
- (전략2) 민간 전문역량(헤드헌팅 등)을 활용하여 핵심인재 신속 유치
- (전략3)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과정을 거쳐 송출비용이 없고 검증된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우선 활용

○ “다른 민족·문화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 (전략1)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상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정비하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과
- (전략2) 이민의 효과를 공개하고, 국민과 이민자 간 갈등중재 체계 마련

IV.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비전



V. 핵심 추진과제

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① 경제에 보탬이 되는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1]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최고 우수인재 유치 지원

그간의 정책 상황

◇ 첨단산업 분야 등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한국 AI 인재 유치 매력도 35위..."¹美·中 유치 경쟁에 이탈 가속화²(25.6. 아주경제)

※ (국정과제)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선진연구자 200명 등)
- ▶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석학, 신진연구자 등을 유치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 등 국내 정착 지원**

- (개선) 최고 우수인재 유치, 유출방지, 정착 지원을 위한 기존 비자제도 개선
- (톱티어 확대) 과학기술 등 연구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 혜택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 분야 확대로 다방면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 (요건) ①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②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3년 이상 근무 포함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 ③ 국내기업과의 고용계약 체결 ④ GNI 3배 이상인 자

현재	확대
▶ 첨단산업 분야(산업부 협업) •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 • 디스플레이 • 인공지능(AI) • 미래차 • 로봇 • 방산	▶ 과학기술 연구 분야(과학기술부 협업)

※ '26.2월 현재 톱티어 비자 총 20명 발급 → (목표) '30년 총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

- (K-STAR* 비자트랙 신설) 5개 대학** 출신의 과학기술 인재만 대상이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한 'K-STAR 비자트랙' 신설로 외국인 우수인재 4배 이상 추가 확보(매년 100명 → 매년 500명 이상)

* K-STAR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K-STAR 비자트랙 주요 혜택 >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 취득까지의 소요기간 최소 3년 단축
-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허용

② 신(新)성장 동력으로서의 유학생 활용

현장의 목소리

- ◇ 기존 외국인력 제도의 한계로 산업계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술(능)직 인력 수요 제기
 - 고용허가제(E-9)는 저학력·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에 한계가 있음
 - 숙련기능인력 제도(E-7-4)는 고용허가제 도입인력에서 전환되어 숙련도는 쌓였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 ※ 고용허가제(E-9) : 342,211명, 숙련기능인력 제도(E-7-4) : 38,110명
- ◇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유학생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학 단계에서부터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사회통합 지원 유도정책 필요
 - *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 후의 취업분야 등 범정부적으로 파악 필요
 -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생존과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질적 관리 부실 등의 과제가 떠오름"(25. 7. 주간한국)

- (개선)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사회 적응력을 갖춘 유학생을 최대한 활용
 - (K-CORE* 비자 신설)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middle-skill) 수준의 외국인력**을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 신설
 - *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E-7-M) :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취득하는 취업비자로,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을 의미
 - **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전문기술학과를 지정('26.2월 현재 16개)해 중간기술인력 양성
 - (사회통합 우수대학 우대) 유학생의 재학 중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해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 ⇒ 우수 학부(학과)에 대해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각종 비자혜택 부여
 - *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대학연계 과정 운영 여부, 유학생 학업·취업성과 등 사회통합 성과 평가

③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등) 확보

그간의 정책 상황

◇ 요양보호사 등 수요의 급증은 외국인 도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비자체계 내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

※ "30년 기준 사회복지 인력은 최대 약 44.4만명 부족 예상"(24. 법무부 연구용역)

○ (개선)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돌봄인력 비자제도' 확대·개편 추진

- (요양보호사 학위과정 운영)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여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요양보호사(E-7-2) 자격변경·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통해 전문 돌봄인력 도입 저변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E-7-2) 가능 대상 : (現)유학(D-2), 구직(D-10)자격 → (改) 국내 체류외국인(F-1, F-3 등)으로 확대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병행하는 지역이민정책 도입

그간의 정책 상황

◇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의 일부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운영 중이나, 외국인력 유치와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이민정책 확대 도입 필요

※ 현행 지역기반 비자정책

-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유학생(D-2), 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78개 기초지자체, 5,072명 배정)
- (광역형 비자)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자유건 설계에 참여하여 지역의 핵심산업 필요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15개 광역지자체, 6,610명 배정)

○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학업 등), 일할 수 있고(취업), 살 수 있게(정주)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숙련 외국인의 효과가 큼(25. 국가정책연구(임태경))

- (학업) 유학생을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지역이민 프로그램 설계
- (정주) 우수인재, 동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각 부처별 정책수단과 연계해 취업·생활 정보, 사회통합 교육, 보육, 자녀교육 등 안정적 정착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

- ◇ 인구감소지역*에서 내국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고용요건**도 충족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 발생

* '25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 (현행 지역특화형(F-2-R) 외국인 고용기업 요건)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함

-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방안 마련
- (특례고용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업력(사업 지속기간),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을 설정하되, 2년간 한시적 시범 도입

③ 농·어업 분야 숙련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현장의 목소리

- ◇ 1차 산업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분야의 핵심인력이지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8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숙련도를 쌓은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상황

※ 계절근로자 '26년 상반기 배정 현황 : 142개 지자체 98,829명 배정

- ◇ 농촌의 고령화, 농업의 산업화 등으로 인한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인력공급 방식 전환 필요

- (개선)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 후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비자」 개편
※ (예시) 계절근로(E-8) → 숙련기능 농·어업 분야 장기자격으로 전환
- (계절근로 지역순환제)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확대
※ ('25. 10.) 포천사·의령군 2곳 시범사업 선정 → ('26.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선정 예정

2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1 기업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자체계 개편

그간의 정책 환경

- ◇ 현재의 취업 비자코드(10종, 39개)는 **나열식 구조**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산업계·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신설·운영**

※ 현행 취업비자 교수(E-1) ~ 선원취업(E-10) 체계는 숙련 등 일부 수준별 구분은 있으나, 체류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님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대상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 (개선) 복잡한 **현행 취업비자(10종 39개)** 체계를 **단순화**하여 기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취업비자(E계열)를 기술(숙련)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개편**

【취업비자 체계 개편 예시(안)】

산업별 숙련도	ICT·디지털	의료·복지	법률·교육	제조	서비스	문화·예술
고숙련 (Highly-skilled)	연구원(E-3), 정보통신 관리자(E-7-1),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E-7-1)	의사(E-5), 간호사(E-7-1)	변호사(E-5), 법학 교수(E-1), 교육 관리자(E-7-1)	기계공학 기술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E-7-1)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E-7-1)	행사기획자, 디자이너(E-7-1)
중숙련 (Medium-skilled)	-	의료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E-7-2)	회화강사(E-2)	용접공·도장공(E-7-3)	운송서비스, 조리사(E-7-2)	관광통역 안내원(E-7-2)
저숙련 (Low-skilled)	-	-	-	고용허가제(E-9-1)	고용허가제 호텔 음식점 등(E-9-5)	-

2 디지털 비자 신청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현장의 목소리

- ◇ 기업인 등이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는 **불편**, 비자·체류허가 등 신청 시의 **복잡한 제출서류** 준비로 비자 신청 등에 **어려움** 발생

- 온라인 사전방문 예약제를 통하더라도 성수기(학기 시작 등)에는 최대 2달 이상 대기

※ “민원 서류 반려에도 영어 안내 부재”, “외국인 민원 대기줄이 명품 매장 수준”, “방문 예약해도 하염없이 대기” 등 민원 불편 사례 빈번 언론보도(한국일보, JTBC, MBC 등)

※ 전문인력인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초청 시 크게 5종(초청사유서, 학위 경력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특히 **고용 필요성 입증과 서류준비에 어려움**

⇒ 공무원이 편한 행정에서 **“기업인 등이 일하기 편한 이민행정”**으로 전환

- (개선) 대민서비스(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구현
- (민원 편의 향상) 방문민원 중심에서 전자민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 AI 다국어 지원 기능을 접목한 비자·체류 민원 안내 및 24시간 민원상담 가능한 지능형 챗봇 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행정)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 AI를 분류심사에 활용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속·정확하게 비자·체류허가 심사
 - ※ 현재는 직원이 종이 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심사 →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청서 오류, 범법기록, 체류이력 등 이상패턴 탐지, 심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업무효율화
- (출입국 대행을 통한 신속 처리) 서류준비(1차검토) 및 전자적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최종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신속 처리
 - ※ '25. 12.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출입국 대행기관은 3,725개(행정사 3,360, 변호사 365)

③ 전문 헤드헌팅 기관 활용 및 국적신청 대리허용을 통한 핵심인재 유치

현장의 목소리

◇ 기업에서는 전문분야 외국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있어도 발굴에 한계가 있고, 우수인재가 국적취득을 희망해도 서류준비 등에 어려움을 호소

※ “글로벌 인재 채용 어려워요...기업 80% 해외채용 실패 또는 시도조차 못해”(‘25. 4. 한경)

※ 최근 3년간 귀화 신청 현황 : (‘22.) 18,079건, (‘23.) 18,736건, (‘24.) 19,470건

- (개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발굴을 위한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방안 마련
- (유치 전담기관)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 시범 도입
 - ※ 인력소개업체 중 재정 건전성,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여부, 계약의 투명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지정·등록해 공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 (국적신청 대리허용)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을 대리·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 개정
 - ※ (현행) 귀화신청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 상담을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1 우리나라에 통합 능력이 높은 유치그룹 분석 및 활용

그간의 정책 환경

◇ 외교관계, 무역활성화, 통합·적응 능력 등의 장기적 국가 전략 없이 산업계·교육계의 수요에 따라 단기 대응식 외국인력 등 유치

- (개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 대상 그룹 분석·평가
- (활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인재형, 유학형, 투자교류형, 문화교류형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우수인재, 외국인력, 유학생 등 유치에 활용

2 빅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적정유입 규모 산정 및 경제효과 측정

그간의 정책 환경

◇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에 대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규모 공표

※ '26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

- ① (기능) 자동차판금·도장원(E-7-3) 330명, 자동차 부품제조원(E-7-3) 100명, 도축원(E-7-3) 150명, 요양보호사(E-7-2) 400명, 항공기(부품)제조원·승전 전기원(E-7-3) 300명, 숙련기능인력(E-7-4) 33,000명
- ② (단순) 계절근로(E-8) 109,100명 / 비전문취업(E-9) 80,000명 / 선원취업(E-10) 23,300명

- (개선) 비자 유형별로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각종 경제적 효과 등 분석

- (유형) 취업비자 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 대상자 추가

※ (현행) 취업비자 → (추가 유형) ① 취업비자, ② 유학연수, ③ 가족이민 ④ 사업투자 ⑤ 관광

- (활용방안) 범죄·불법체류 등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파악 및 적정 유입규모 재산정

※ '25. 11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등)에 따라 외국인 적정 유입 규모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 중

③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현장의 목소리

◇ 현재 전문·숙련 취업비자별로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직종별 월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요건으로 임금수준을 설정*** 중

* '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및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원 이상 등

- 외국인력의 유입이 국민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존재해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필요

** 조선업 외국인 직고용에 대해 지역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자국 숙련공 외면" 등을 사유로 반발('25. 10. 연합뉴스)

- (개선)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임금하락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취업비자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임금요건을 설정·고시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한국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자 등 일부 내국인에게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21. 김혜진 등, "Wage and employment effects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 '25. 11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등)에 따라 사증 발급규모 산정을 위해 설치·운영할 '자문위원회'에서 취업비자 임금요건 설정을 추가하여 연구·검토

※ (영국) 정부의 독립 자문기구로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된 임금·고용 기준을 내무부 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를 운영

- (절차) **노사정 각 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민·노동경제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 등을 고려** ⇒ **매년 임금요건 설정 및 고시**

4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① AI·생체인증 등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 출입국심사 도입

현장의 목소리

◇ 방대한 승객정보를 수동분석하거나 제한된 분석시스템으로 처리함에 따라 위험인물 선별의 신속성·정밀성 부족, 출입국자의 폭발적 증가로 공항만의 혼잡도, 대기시간 증가로 여행객 불편 심화

(현행 사전분석 시스템) ①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무사증 입국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여행정보를 입력, 사전에 여행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 ②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항공사에서 탑승객 명단을 사전에 전송받아 승객정보 분석,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개선) 연간 출입국자 수 1억 명 시대에 대비하여 AI·생체인증 기반 위험 평가와 적격성 심사를 도입

※ '30년 인천공항 국제여객수요 1억2천만명 예측(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 (AI 기반 사전심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전심사시스템(K-ETA, APIS)을 고도화하여 입국외국인 위험도를 신속하게 분류,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정밀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에게 신속한 심사 제공
- (AI 기반 자동출입국심사)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여권판독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한 기술을 적용,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 제공



【해외 사례】

- ▶ (싱가포르) 사전등록자에게 여권판독이 필요없는 자동심사 전면 시행('24년)
- ▶ (UAE) 사전등록자에게 AI 기반의 여권판독이 필요없는 통로형 자동심사 도입('25년)
- ▶ (미국) 사전등록자에게 여권판독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과하는 SBE(Seamless Border Entry) 확대 시행('25년)

②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고용을 촉진하는 인증제 도입

그간의 정책환경

- ◇ 단속만으로 불법취업 규모를 줄이기는 물리적·인력적 한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36.8만명에서 20만명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약 9년('34년) 소요 예상
- ※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단속인력 1인당 1,000명('24.10. 머니투데이)
-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모범기업일지라도 불법취업자 고용주와 똑같은 대우(쿼터, 심사 처리기간 등)가 적용되는 불공정 구조(외국인력을 불법 고용한 불량기업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향)

- (개선) 기존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체류 등 법 위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
-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류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게 신뢰 등급(A 또는 B)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 신뢰에 기반한 외국인력 합법 고용 관리 분위기 조성
- 법무부장관 명의의 K-Trust기업 로고를 부여하여 기업인에게 긍정적 평판 제공

* (신뢰 등급 부여 기준) i)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노동법 위반 여부 ii) 숙소·안전·위생관리 iii) 외국인력 근속률·재고용률 등

** (인센티브) A등급 기업에게 고용 쿼터 20~30% 추가 허용, 외국인 등록·체류연장 신속승인(Fast Track)하고, B등급 기업에게 현행 유지, C등급(불법 고용) 기업에게는 신규고용 제한 및 개선 명령(집중 점검)

※ (해외사례) 덴마크 이민통합부 산하 SIRI(취업통합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고속권 외국인 채용 시 신속유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Fast-track 적용, 호주 내무부에서 인증한 Accredited Sponsor(인증 스폰서)는 비자 심사에 우선처리 혜택 부여

- ('보이는 치안 활동') 단속 예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용 정보수집을 통한 동향 파악,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강화 등으로 범죄예방 및 억제
- * '25. 12.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순찰차 16대 보유 → 순찰차 20대(서울청, 인천청, 부산청, 수원청 각 1대씩 추가) 증차 추진
- ※ 시민이 체감하는 형태의 순찰, 제복착용, 치안 홍보 등의 가시적 활동은 범죄예방과 주민 심리안정이라는 이중적 효과('19. 경찰학연구(박기태))

5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1 반(反) 이민정서 대응·예방 체계 마련

현장의 목소리

◇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확산*, 정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제도적·사회적 대응은 미흡

* "전산망 마비로 중범죄자들 입국, 국가위기 속 '가짜뉴스' 판쳐"('25.9. 문화일보)

** (성인 다문화수용성, 여가부) '15년 53.95점→'18년 52.81점→'21년 52.27점→'24년 53.38점

- (개선) 사회 전반의 반(反) 이민정서 및 동포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갈등 관리·예방 시스템 마련
- (갈등 예방) 체류외국인 증가 및 이민정책 활용 확대에 따른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하여 해법 모색
 - ※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 사건...유엔 인증차별철폐위 "한국정부가 해결 권고"'('25.4. 연합뉴스), 서울 도심 활보한 혐중시위... 원색적 욕설에 몸 피한 中관광객('25.9. 연합뉴스) vs '크루즈' 타고 온 2천명 유커... 들뜬 명동 "그 고객들 손이 커"'('25.9. 한겨레신문)
- (국회와 소통 강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정례적인 국회 보고 절차 마련

국회보고 절차 관련 국내·외 사례

- (국내)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성평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건강가정 기본계획(성평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문화유산 기본계획(문화재청, 문화유산법 제7조의2)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제출 절차를 두고 있음
- (해외) 캐나다는 매년 이민통계와 향후 3년간 이민수용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캐나다 이민법 제94조), 미국은 움부즈맨이 USCIS(국적이민서비스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고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국민수용성 제고) 주기적(3년)으로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여 국민인식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
 - *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수용성, 이민자 대상 태도, 이민자 지원범위 의견 등
- (동포 인식 개선)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를 통해 국민의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활동 추진
 - ※ (활동 예시) 동포-지역주민 교류 행사, 동포와 함께하는 지역봉사 활동, 동포의 취업·창업 성공사례 홍보, '동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 제작 등

② 장기거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및 참여 촉진

현장의 목소리

- ◇ 체류외국인 증가와 체류유형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접근성이 부족해 사회적응교육 기회가 제한*
 - * "일하는 평일에 물린 한국어 수업, 이주 노동자 발동동"(25.3.19. 강원 MBC,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변화 및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 제안(25. 4. 25. 전국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간담회)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15년 25,795명 → '25년 90,180명(3.5배 증가)
 - ◇ 사회통합은 법질서 준수·한국어 습득 등 외국인의 기본 의무를 전제로 한 자발적 통합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성과는 이민정책적 인센티브(비자·체류·귀화 등)와 연동 필요
-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 체류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예방
- ※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총괄부처로, 사회통합교육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적 수단(비자발급, 체류허가, 귀화허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교육 의무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일정단계 이상을 이수해야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부여
 - * 정주형 체류자격부터 우선 의무화하고, 체류기간별 사회통합 요구 수준에 따라 단계별 확대
 - ※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가 교육 의무화 시행 중
 - (맞춤형 교육) 입국 전 외국인, 동포, 유학생, 동반가족 등 체류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입국 전 외국인)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이 입국 전에 기초 한국어 등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구축
 - (동포) 동포특화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 (유학생) 참여 희망 대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규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행 단계당 100시간을 45시간으로 조정 → 유학생이 재학 중 사회적응을 쉽게 받도록 하여 졸업 후 신속 정착 유도
 - ※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25년 10,411명(총 참여자 90,180명의 11.5%)

- (동반가족) '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35,000명)가 대폭 확대되면서 E-7-4의 동반가족(F-3-74) 증가에 대응한 별도 특별반 편성
- * (체류현황) '25. 12 숙련기능인력(E-7-4) 40,858명, 동반(F-3-74, '24. 6월 코드 신설) 13,564명
- (AI 활용) 교육 효과성 제고와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AI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 * AI 기반 레벨테스트,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24시간 학습 보조 등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교육·성장 지원

현장의 목소리

- ◇ 이주배경학생 규모가 지속 증가* 중이나,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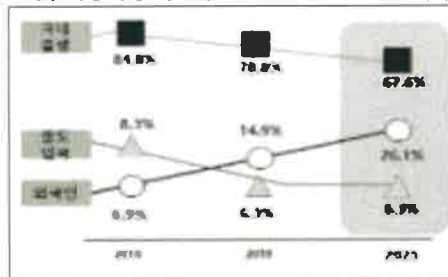
* ↑ (이주배경학생) ('14.) 67,806명 → ('25.) 202,208명 (3배 증가)

↳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구성비율) ('14.) 6.9% → ('25.) 26.1%(3.8배 증가)

10년간 이주배경학생 구성별 증가(명)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구성비(%)



※ 이주배경 청소년 절반 "친구들만큼 학교생활·공부 못했다"('25. 9. 2. 연합뉴스)

- (개선) 입국시기, 체류자격 등 이주배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과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한국어 교육) 외국인가정 자녀*의 초기 적응**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화 추진
- * '14년 4,706명 → '25년 52,876명으로 11배 증가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로서 국내출생 이주배경 자녀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공교육 진입·적응이 어려우며, 재학률 또한 낮음(부모 일터 따라 한국 온 아이들 "말 못알아들어 학교가 괴로워요", '25.10. 21. 한겨레)
- ※ 초·중등학교 방과후 학습 시간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 (공교육 진입) 법무부, 교육부 등 부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출신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진입 안내 자료 개발·보급
- (멘토) 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통합 멘토단 등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 지원
- ※ '25. 12월 다문화사회 전문가 12,185명, 멘토단 39명

- (인식 개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홍보대사로 위촉 및 유튜브 등 활용 대국민 홍보
 ※ (사례) '17년 여가부 모델 한현민을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25년 충주시 글로벌 소통 능력 갖춘 인도 출신 청소년(삼희 코폴라)을 홍보대사로 위촉
- (용어 및 통계 정비) 부처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칭 용어를 통일성 있게 재정의하고 통계 기준을 정립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자녀(법무부),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이주배경 청소년(성평등부), 외국인주민 자녀(행안부), 이주배경 학생(교육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지원 체계)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분과'를 운영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 (위원 부처)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으로 구성

4 외국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충

현장의 목소리

-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권익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 미비
 *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은 매년 평균 1,200억원(노동부),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묶고 조종"(25. 7. YTN)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25. 7. 24. 수석·보좌관 회의, 대통령 말씀)

- (개선) 침해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실질적 권리 보장
- (권익증진협의회 제도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 창구 상설 운영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
 * 현재는 지침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지방) 100회, (중앙) 8회 협의회 개최
 ※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의 착취, 인권침해를 상정안건으로 추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허용하고, 필요시 피해구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
- (임금체불 해결 지원)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고, 무료 법률·노무상담** 강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 추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114명) 활용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은 불법체류 중이라도 강제퇴거 위험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됨(25. 11.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VI. 추진기반(조직·재원) 마련

① (조직) 이민정책 전담조직 확대·강화

그간의 정책 상황

- ◇ 현재 조직*으로는 인구위기 대응, 해외 인재 유치, 동포 포용, 지역균형 성장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 및 포용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에 근본적 한계
- * '07년 출입국관리국(2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급, 2개단)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07년 대비 체류외국인 증가(106만명 → 278만명) 등 정책여건 변화
- ※ ('25. 11. 문체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로 나타남('22. 코리아리서치 조사 65%, '24.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68.6%)

- (개선) 법무부의 이민정책 전담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기조에 맞춘 이민정책 추진
- ※ (언론동향) 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요구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 (본부 확대 개편) 외청 설치 시의 부담 및 법무부장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정책의 일관성, 장래적 관점의 행정수요·업무 대응을 위해 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확대와 기능 신설
- ※ (참고 사례) ①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1조정관 3국) ②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4실) ③산업부 통상교섭본부(1차관보 3국) ④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실 1국) 등 본부장은 차관급(정무직)

② (재원) 사회통합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그간의 정책 상황

- ◇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 반감 및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속성 확보가 곤란
- ※ (해외사례) 미국 이민심사수수료계정(Immigration Examinations Fee Account): '24. 약8조 4천억원, 캐나다 영주권정착 수수료(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24. 약 1,577억원, ㉕ 난민이주 기금(Asylum and Migration Fund), 독일 난민이주통합 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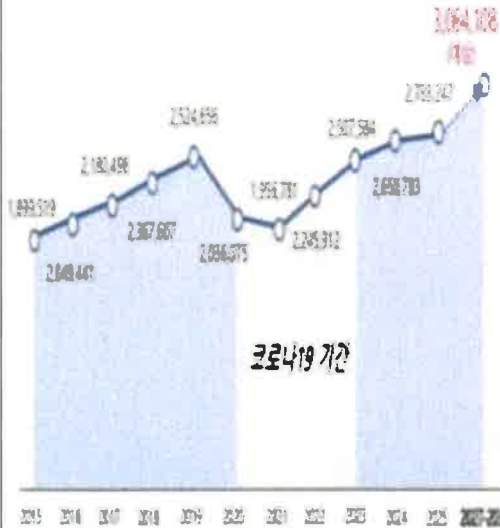
- (개선)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반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검토
- ※ '25. 12. 23.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내용이 포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민주당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

참고 1 외국인 유입과 정책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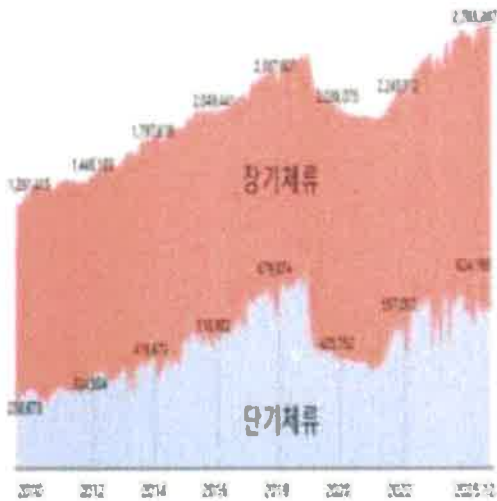
구분	2000년대	⇒	2010년대	⇒	2020년대	⇒	2030년대 (예상)
거주현황	비전문인력 중심 ▶ 체류외국인 49만('00.) → 117만명('09.)으로 급증 ▶ 국제결혼, 제조업 등 비전문인력이 다수		외국인 증가 다변화 ▶ 체류외국인 128만('10.) → 252만('19.)으로 지속 증가 ▶ 체류외국인 다변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F-4, H-2), 난민 신청자 등]		이민정책 이슈화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일시감소[195만('21.)] 후 회복[273만('25.)] ▶ 전문인력유학생이 증가 하였으나, 비전문인력 수요도 여전		인재유치/경제성장 ▶ 체류외국인 300만 이상 ▶ 고령화·저출산 심화 및 AI·자동화로 저숙련 인력은 일부 대체하되, 첨단우수인재 경쟁 증가 사회통합 ▶ 가족 동반 및 이민 2세대 증가(이민2세대 '22년 33만명 → '42년 약 67만명(통계청), 국내 대학에 유학생 증가
국내제도	초기 제도 정비기 ▶ 산업연수생 제도(법무부) 폐지 후, 고용허가제(노동부) 도입('0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07.) ▶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09.)		외연 확대기 ▶ 투자이민 제도 도입('10) ▶ 제2차('13.), 제3차('1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 난민법 시행('13.) ▶ 재외동포(F-4)의 범위 확대 (기존 3세대 → 4세대 이상) ('19.)		추진체계 재정비기 ▶ 출입국·이민관리청 등 이민관련 컨트롤 타워 본격 논의('22 ~)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 확대('23.)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 신(新)출입국 이민정책 발표('24. 9.)		성장 및 공존 ▶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추진 ▶ 외국인과 주민 간 갈등 조정 ▶ 지역·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비자·이민정책 활용
외국사례	이민제도 정비기 ▶ (독일) 이민법 제정으로 이민국가로의 전환 명문화('05.) ▶ (미국) 9.11. 계기로 국토안보부 신설(DHS)('02) ※ 시민권이민국(CIS), 세관 이민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출범('03.) ▶ (EU)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블루카드 도입('09.)		인재유치개방통합강화 ▶ (미국) DACA(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등 개방적 이민정책('12.) → 트럼프 정부 1기 반이민정책으로 선회('16) ▶ (일본)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인력 제도 도입('19.) ※ 유럽 등 일부 후발 이민 국가 다문화 실패 선언 후 통합정책 강화('11)		관리강화 ▶ (미국) 친이민정책(바이든 정부) → 반이민정책(트럼프 정부) ▶ (독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기술인력 이민법 도입했으나('23.), 최근 메르스 총리는 강경이민 정책으로 선회('25. 5.) ▶ (캐나다) 50만명 이상 이민자 유치 목표를 발표했으나('22), 최근 유학생 신규허가 상한 도입 등 제한적 이민정책 선회('24.)		이민과 반이민의 상충 ▶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 vs. ▶ 반이민정서 확산, 사회통합 실패로 이민장벽 강화

참고 2 주요 통계

가. 전체 체류외국인



나. 장·단기 체류외국인



<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2015~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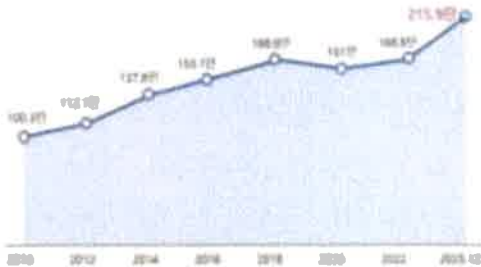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연 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190.0	204.9	218.0	236.8	252.5	208.6	195.7	224.6	250.8	265.1	278.3	
장기체류	소계	146.8 (77.3%)	153.1 (74.7%)	158.3 (72.6%)	168.8 (71.3%)	173.2 (68.6%)	161.0 (79.1%)	157.0 (80.2%)	168.9 (75.2%)	188.2 (75.0%)	204.2 (77.0%)	215.9 (77.6%)	
	유학 (D2,D41,D47)	9.4 (5.0%)	11.2 (5.4%)	13.0 (6.0%)	15.6 (6.6%)	17.5 (6.9%)	14.9 (7.3%)	15.8 (8.1%)	19.1 (8.5%)	21.9 (8.7%)	25.5 (9.6%)	30.1 (10.8%)	
	취업	전문 (E1-E7)	4.7 (2.5%)	4.7 (2.3%)	4.5 (2.0%)	4.5 (1.9%)	4.4 (1.7%)	4.0 (2.0%)	4.3 (2.2%)	4.8 (2.1%)	6.9 (2.7%)	8.6 (3.2%)	10.4 (3.7%)
		비전문 (E8-E10)	28.6 (15.0%)	28.9 (14.1%)	28.9 (13.2%)	29.2 (12.3%)	28.8 (11.4%)	25.1 (12.3%)	23.1 (11.8%)	27.4 (12.2%)	33.1 (13.2%)	36.9 (13.9%)	38.9 (14.0%)
		동반 (F3)	2.2 (1.2%)	2.3 (1.1%)	2.2 (1.0%)	2.2 (0.9%)	2.2 (0.9%)	2.0 (1.0%)	2.1 (1.0%)	2.4 (1.1%)	3.0 (1.2%)	5.1 (1.9%)	7.4 (2.7%)
	동포 (H2,F4)	60.8 (32.0%)	61.9 (30.2%)	63.7 (29.2%)	68.7 (29.0%)	68.4 (27.1%)	61.7 (30.3%)	59.9 (30.6%)	60.2 (26.8%)	63.5 (25.3%)	64.5 (24.4%)	63.5 (22.8%)	
	영주 (F5(F52제외))	9.8 (5.1%)	10.3 (5.0%)	10.6 (4.9%)	11.1 (4.7%)	12.0 (4.8%)	12.8 (6.3%)	13.5 (6.9%)	14.4 (6.4%)	15.4 (6.1%)	17.1 (6.4%)	18.9 (6.8%)	
	결혼 (F6,F21,F52)	15.0 (7.9%)	15.1 (7.3%)	15.4 (7.0%)	15.7 (6.6%)	16.4 (6.5%)	16.7 (8.2%)	16.7 (8.5%)	16.8 (7.5%)	17.3 (6.9%)	18.0 (6.8%)	18.6 (6.7%)	
	기타	16.3 (8.6%)	18.9 (9.2%)	20.0 (9.2%)	21.8 (9.2%)	23.4 (9.3%)	23.8 (11.7%)	21.6 (11.1%)	23.7 (10.6%)	27.1 (10.8%)	28.4 (10.7%)	28.0 (10.1%)	
	단기체류		43.2 (22.7%)	51.9 (25.3%)	59.7 (27.4%)	68.0 (28.7%)	79.3 (31.4%)	42.6 (20.9%)	38.7 (19.8%)	55.7 (24.8%)	62.6 (25.0%)	60.9 (23.0%)	62.4 (22.4%)

※ 유의 : 각 수치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①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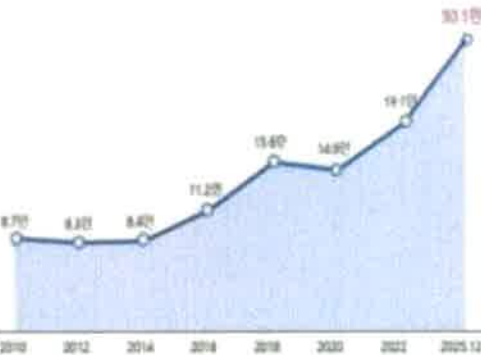


② 지역별 분포 변화



라. 유학생(유학(D-2), 연수(D-4) 등)

① 연도별 추이



② 지역별 분포 변화



마. 외국인력(E계열 취업비자)

① 연도별 추이



② 지역별 분포 변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발제 1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법무부 김민경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2026. 4. 22.

 법무부

01. 정책환경 분석

 법무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외국인 규모 확대

- ✓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연령인구) '20년 3,730만 명 → '30년 3,417명 (313만명 감소)
 - ※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도커스」
- ✓ '25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 → 2030년 내 300만 명 돌파 예상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유입을 설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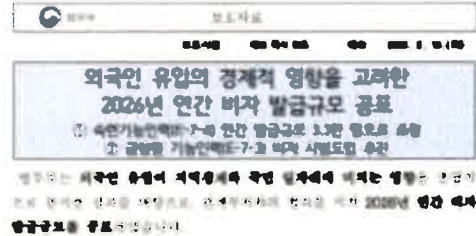
02.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노동시장 수요,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매년 비자 발급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

※ 2024년 시범도입 → 2025년 정식운영 시작



과거

단기적인 인력 부족 대응
임기응변적인 외국인력 도입

※ E-9 도입규모: 23.12만명(10.2만) → **24.165만명(8.1만)**
→ 25.13만명(5.8만) → 26.8만명
* 괄호 안은 실제 비자 발급건수를 의미

개선방향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유입규모 설계

02.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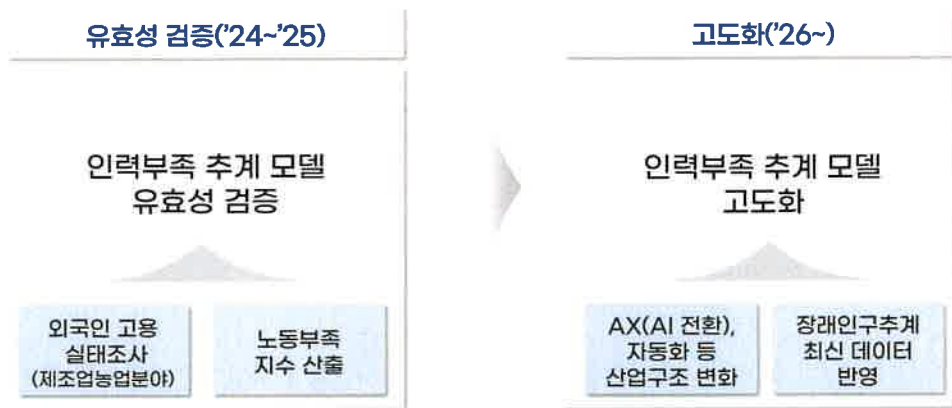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전망('30년 기준, 전국)

구 분	전망(2030년 기준, 전국)			소 계
	전문직	준전문직	숙련기능직	
제 조 업 (부리산업 포함)	24,800~	100,300~	48,600~	173,700~
	50,300	201,000	98,600	349,900
건 설 업 (공사업 포함)	12,600~	20,200~	20,900~	53,700~
	25,200	40,300	42,100	107,600
보 건 업	49,400~	8,000~	-	57,400~
	98,700	16,000	-	114,700
사 회 복 지 업	25,300~	97,400~	-	122,700~
	50,500	194,900	-	245,400

02.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전망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5

02.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



외국인 유입의 영향 분석

숙련기능인력 영향 분석

구인난 완화
E-7-4 비자 활용도 1%당
유효구인인원 0.16% 감소

생산성 증가(뿌리산업)
E-7-4 비자 활용도 1%당
1인당 부가가치 0.1% 증가

내국인 인구이동 영향 분석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증가할 때
'직업' 사유로 전입하는
내국인 약 1명 증가

내국인 고용 영향 분석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 취업자 수 증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6

02.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규모 분석



분석 대상 다양화



**노동력 관점만이 아닌, 인구·지역·재정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국인 유입 분석 추진**

03. 적정 임금요건 설계: 필요성



GNI(국민총소득) 등 단일 기준 중심의
일률적인 임금요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외국인 유입의 '질'과 '영향'에 대한
분석·관리 중요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금요건 기준 설계 필요 ↑**

- ✓ 왜곡된 정책효과 발생
- ✓ 내국인 일자리·임금 부정적 영향

※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업종, 숙련도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 **저임금 구조 고착화**

03. 적정 임금요건 설계: 임금요건 체계 개선 연구(26~)



연구목적

- ✓ 현행 임금요건 설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
- ✓ ‘직종별 평균임금’, ‘중위소득’, ‘지역별 생활임금’ 등 다양한 지표를 비교 분석
→ 체류자격별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설계
-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임금요건 체계 마련

03. 적정 임금요건 설계: 임금요건 체계 개선 연구(26~)



해외사례

영국: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 영국 내무장관의 위임을 받아 취업비자 적용 급여 기준 및 할인제도를 검토하는 독립자문기구

이종구조 임금요건 체계: 일반기준(General Threshold, £41,700 (P30)),
직종별 기준(Occupation-Specific Threshold) 중 높은 금액

- ✓ 정책목표에 따라, 중위값 및 백분위 지표 활용, 직종별(예. Health care Worker) 프리미엄/할인을 적용
- ✓ 과거 비자 발급 데이터 등을 이용, 급여 기준 변경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03. 적정 임금요건 설계: 임금요건 체계 개선 연구(26~)



적정 임금요건 분석 모형(안)



다양한 독립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임금요건 분석 추진

04. 향후 정책방향



외국인 유입 설계 방향



감사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발제 2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법무부 이향숙 체류관리과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2026.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제1장

“정책환경과 전환 방향”

1. 정책 환경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험
가속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포함
뿌리산업 까지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난 심화”**

단순인력보충 → “전략적유치”
해외 인재 = 핵심 정책 대상

**해외 인재 확보
“국가 경쟁력의 핵심”**

핵심 “해외 인재 확보 = 국가 생존전략” 이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1-1. 유형별 인재 유치 비자(예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완성형 인재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선제 확보

최고급 인재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첨단산업 분야·특정 분야

F-2-1 비자
E-7-5 첨단산업
F-2-1 비자

전문인력 등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서비스종사자

E-1, E-7 비자

숙련인력
장기근무로 현장 숙련 형성 외국인근로자

연간 최대 3,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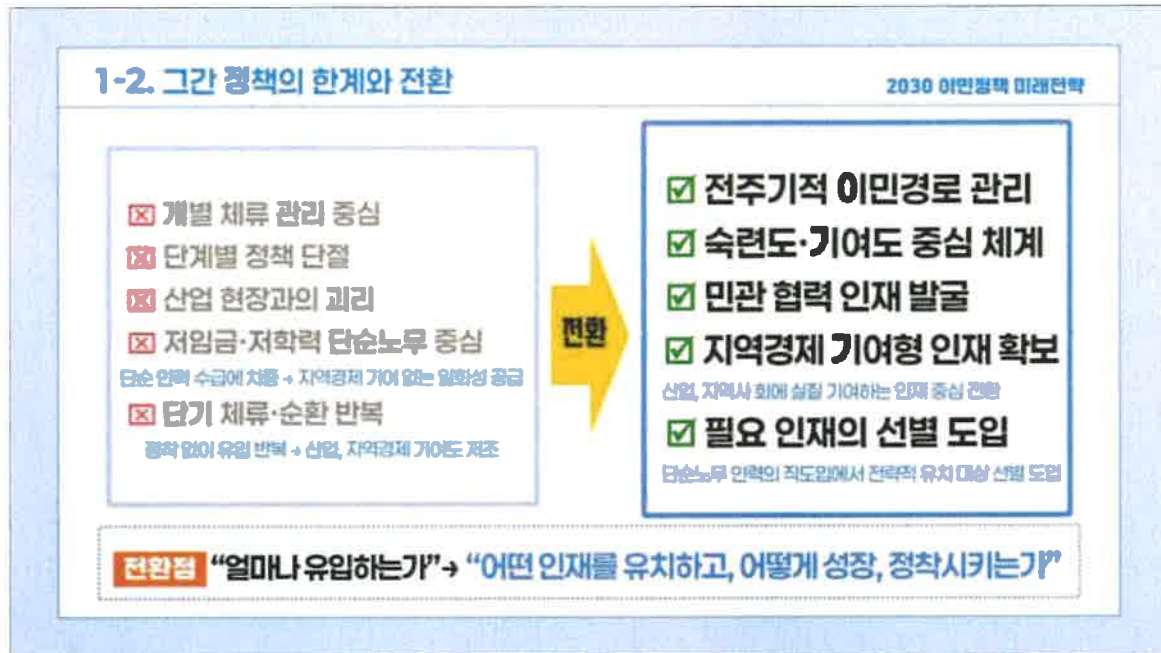
육성형 인재
교육·훈련으로 국내에서 직접 양성·정착

K-STAR 비자 트랙 [32개 대학]
이공계 석박사 →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부여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1개 대학, '26년 신규]
돌봄 특화 학위 과정
유학(D-2) → E-7-2

K-CORE(육성형 전문기술인력) [16개 전문대]
조선업·정밀기계 등 지역산업 특화 기술학과
유학(D-2) → E-7-M

핵심 “완성형” 선제 확보 + “육성형” 투자 = 국가 인재 유치 투트랙(Two-Track) 전략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제2장 - 정책방향 1

“육성형 이민 : 다층적 인재 확보”

최고급 인력 / 필수전문인력

2-1. 정책방향 - 육성형 이민 : 다층적 인재확보 (최고급인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TOP-TIER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 대상

-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
- 소득 1인당 GNI의 2~3배 +

▷ 지원

- 관계부처 직접 발굴→검증→추천
- 비자 + 세제 혜택 + 정착 지원 일괄 연계

III K-STAR 정착 K-STAR 비자 트랙

▷ 대상

-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즉시 부여

▷ 성과

- 영주권 취득기간 3년으로 단축
- 거주(F-2) → 영주(F-5) 연계

25년 5개 + 26년 32개 대학

전략 “완성형인재” 선제 확보 + “육성형인재” 투자 → “루트랙(Two Track) 우수인재” 유치 전략

2-1. 정책방향 - 육성형 이민 : 다층적 인재확보 (필수전문인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직도입 인력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기능인력

E-7 (특정활동)

-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 즉시 투입

♥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 21개 대학 학위과정 운영 시작(26년 3월)

유학(E-2) → E-7-2 취업연계

-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 특화

III K-CORE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 ·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

유학(E-2) → E-7-M 취업연계

- 조선업, 정밀기계 등 지역 산업 특화

통합구조 유입 → 성장 → 정주: 하나의 통합 구조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

제2장 - 정책방향 2

“전주기적 이민경로 관리”

유입 ⇒ 성장(정주) ⇒ 정착(영주)

2-2. 정책방향 - 전주기적 이민 경로 관리 (우수사례)

[STEP1]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사출공장에서 4년간 현장근무
- 단순반복 업무 숙 기술 성장 한계 인식 후 귀국 결정

[STEP2]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D-2)

- 뿌리산업 양성대학 입학
- 소성가공 전공 체계적 기술교육 이수 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STEP3] 전문인력(E-7) 취업 및 가족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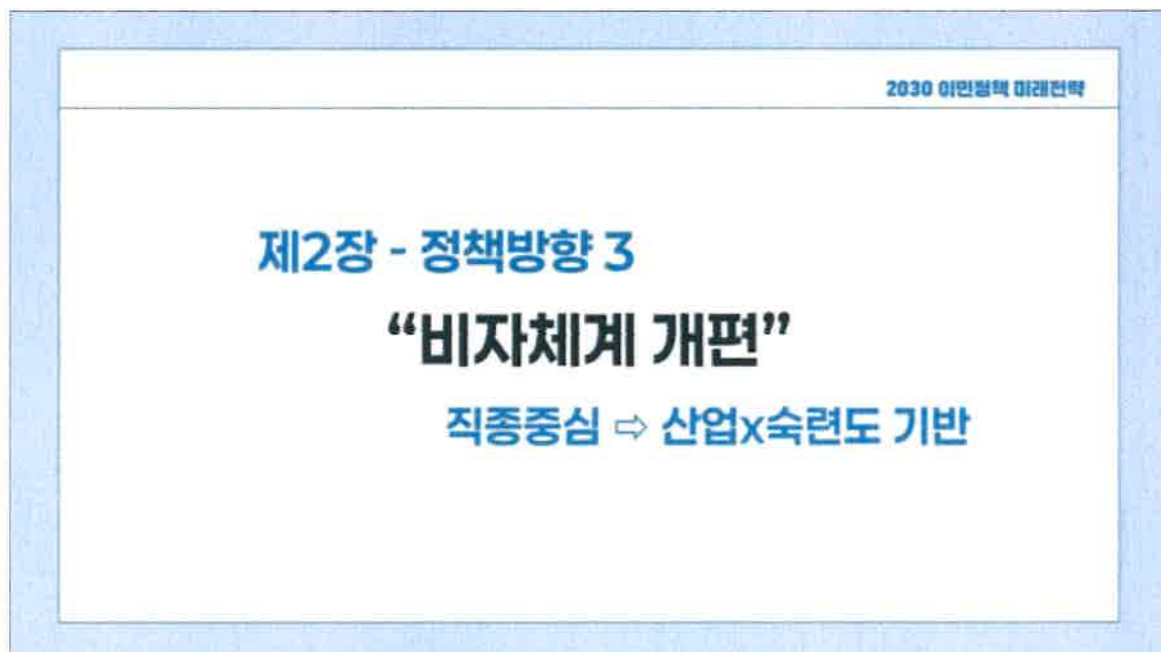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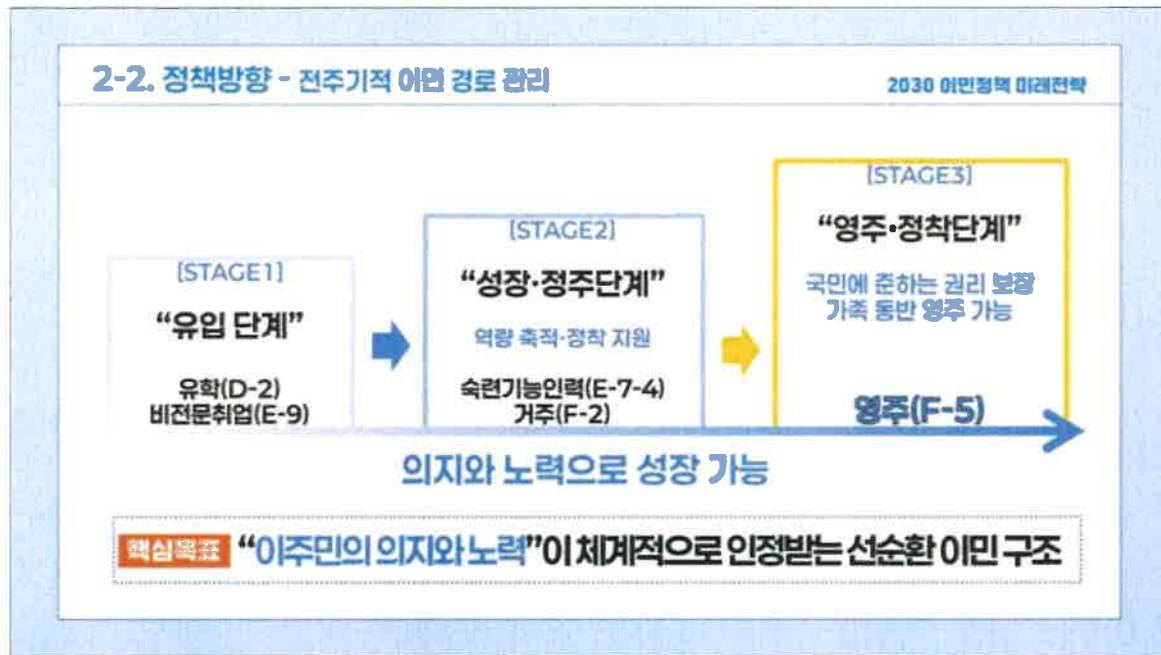
- 직무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 고용허가제(E-9) 신입 근로자 멘토 역할 수행
- 배우자·자녀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



- 미얀마 출신 · 39세
- 영남이공대 소성가공 졸업
- TOPIK 5급

핵심

“의지와노력”이 성공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



2-3. 정책방향3 : (취업) 비자체계 개편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약 900여개 직종 세분화

단순 직종별 세분화로 행정 복잡성 ↑, 예측가능성 ↓

❌ 유연성 부족 + 행정 비효율

산업 현장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구조

전면
개편

✅ 산업X숙련도매트릭스체계

직종 분류에서 산업·숙련도 기반을 개편, 탄력적 운영

✅ 산업 수요에 유연한 대응

산업,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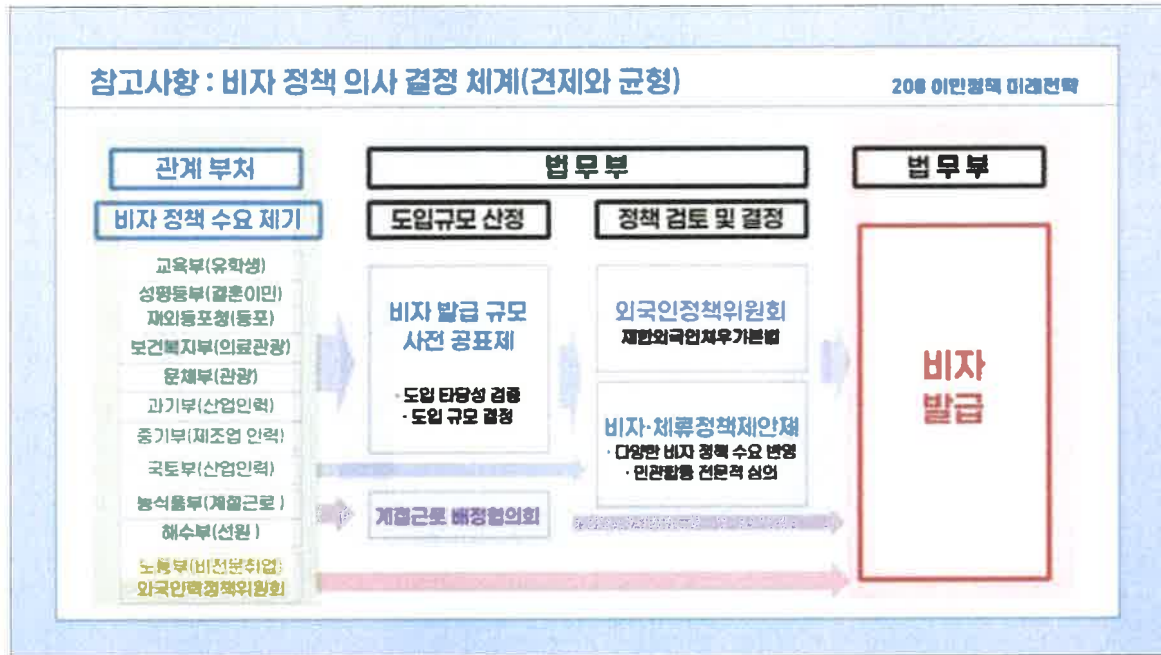
전환점 “어떤 일을 하는가” →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도와 역량을 갖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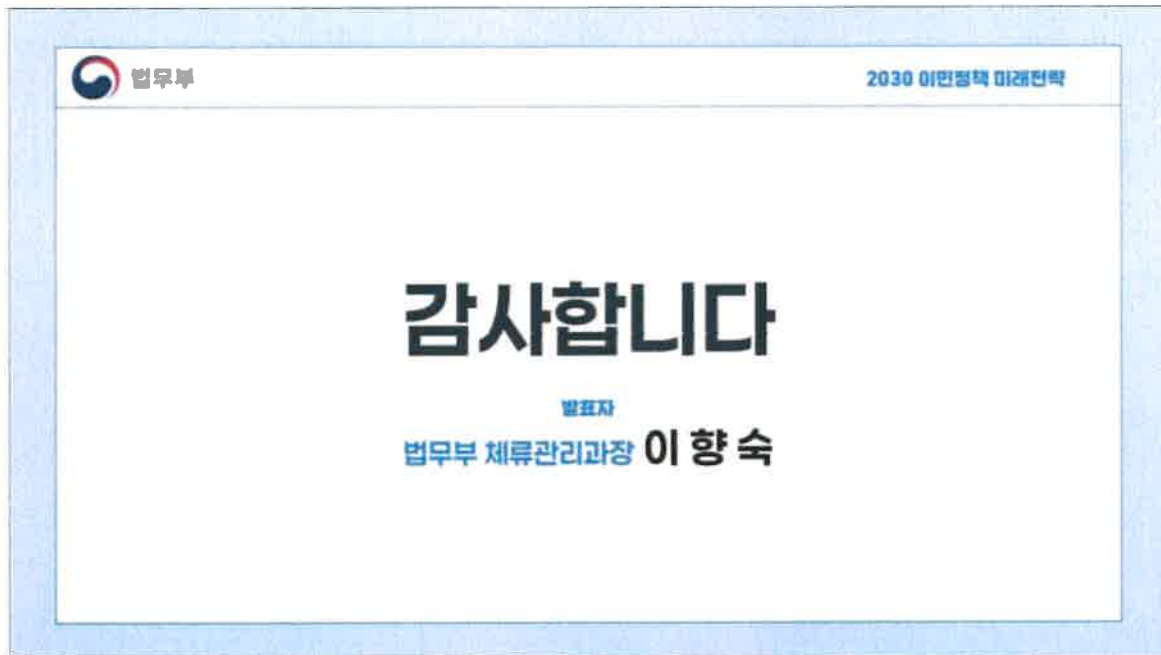
2-3. 정책방향3 : (취업) 비자체계 개편 (예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구분	ICT	의료·복지	법률·교육	제조(뿌리)	서비스	문화·예술
고숙련 Highly Skilled	연구(E-3)	의사 (E-5) 간호사 (E-7)	변호사, 교수 (E-1, E-5)	기계공학자 (E-7-1)	여행 관리자 (E-7-1)	기획, 디자이너 (E-7-1)
중숙련 Semi-Skilled		요양보호사 (E-7-2)	회화강사 (E-2)	용접, 기능공 (E-7-3)	조리사 (E-7-2)	관광안내 (E-7-2)
저숙련 Entry Level		간병인		고용허가제 (E-9)	호텔·음식점 단순노무 (E-9)	

핵심 900여개 직종, “산업 x 숙련도” 고숙련에서 저숙련까지 산업 수요에 유연한 대응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1.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2.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2026년 4월 22일

서울대 경제학부

이 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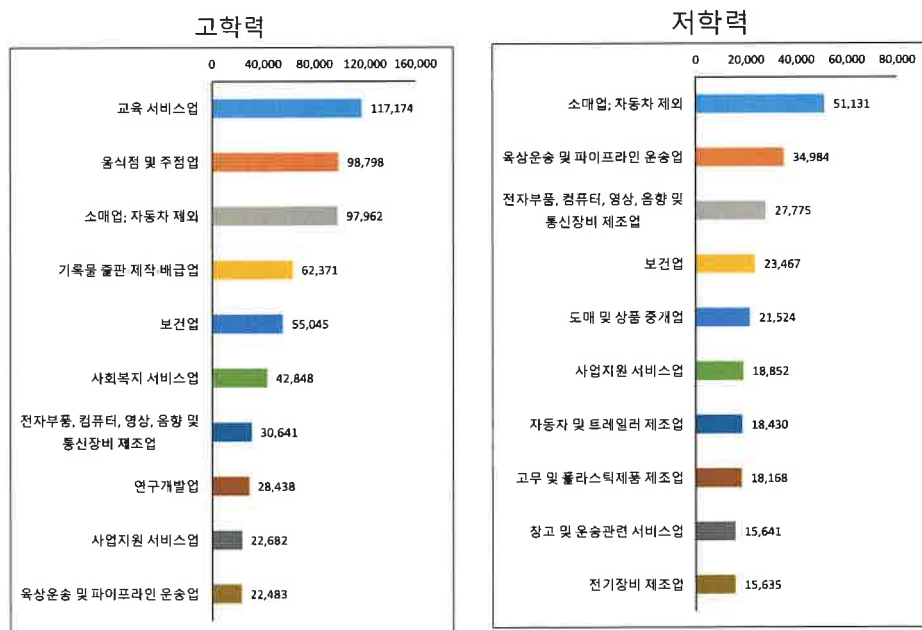
토론 개요

-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법무부의 외국인력 정책 합리화/고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발표된 내용은 이러한 노력의 결정판 → 합리적, 효율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토론에서는 추가적인 개선 방향 제안.

1.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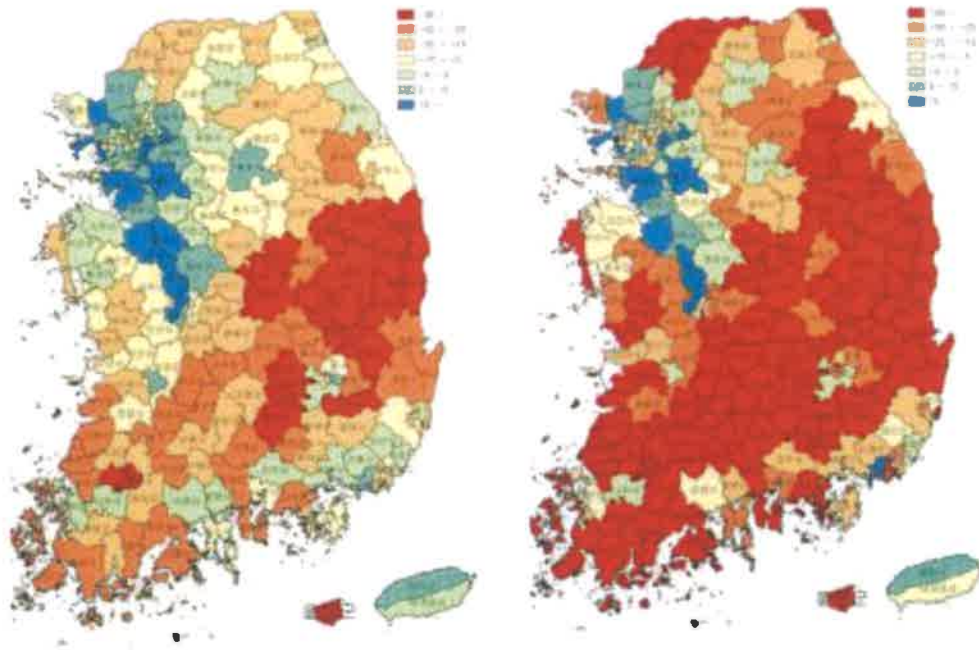
- 가까운 장래에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 → 이에 대비한 대량 외국 인력 수용은 불필요.
- 인구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부문, 지역, 숙련수준별 수급불균형은 확대 예상 → 외국인력 정책 필요성의 핵심
- 각 부문/유형 인력 부족을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 → **다른 정책(교육, 훈련, 노동시장 정책 등)과 결합**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력 활용이 효과적인 경우 적절한 유형의 인력을 선별해서, 필요한 부문/지역에 배분해야 할 것.
- 외국인력 수요 파악 및 도입 정책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구분된 직종과 업종, 더 합리적으로 정의된 숙련 수준별 수급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된 데이터 필요.
- 산업, 직종, 숙련 수준별 노동 수급 변화는 지역별로 상이함 → 부분과 지역을 지역과 결합하여 살펴볼 필요.

2021~2031년 인구변화로 인한 학력 및 산업별 20-34세 노동공급 감소 규모: 상위 10개 산업 (이철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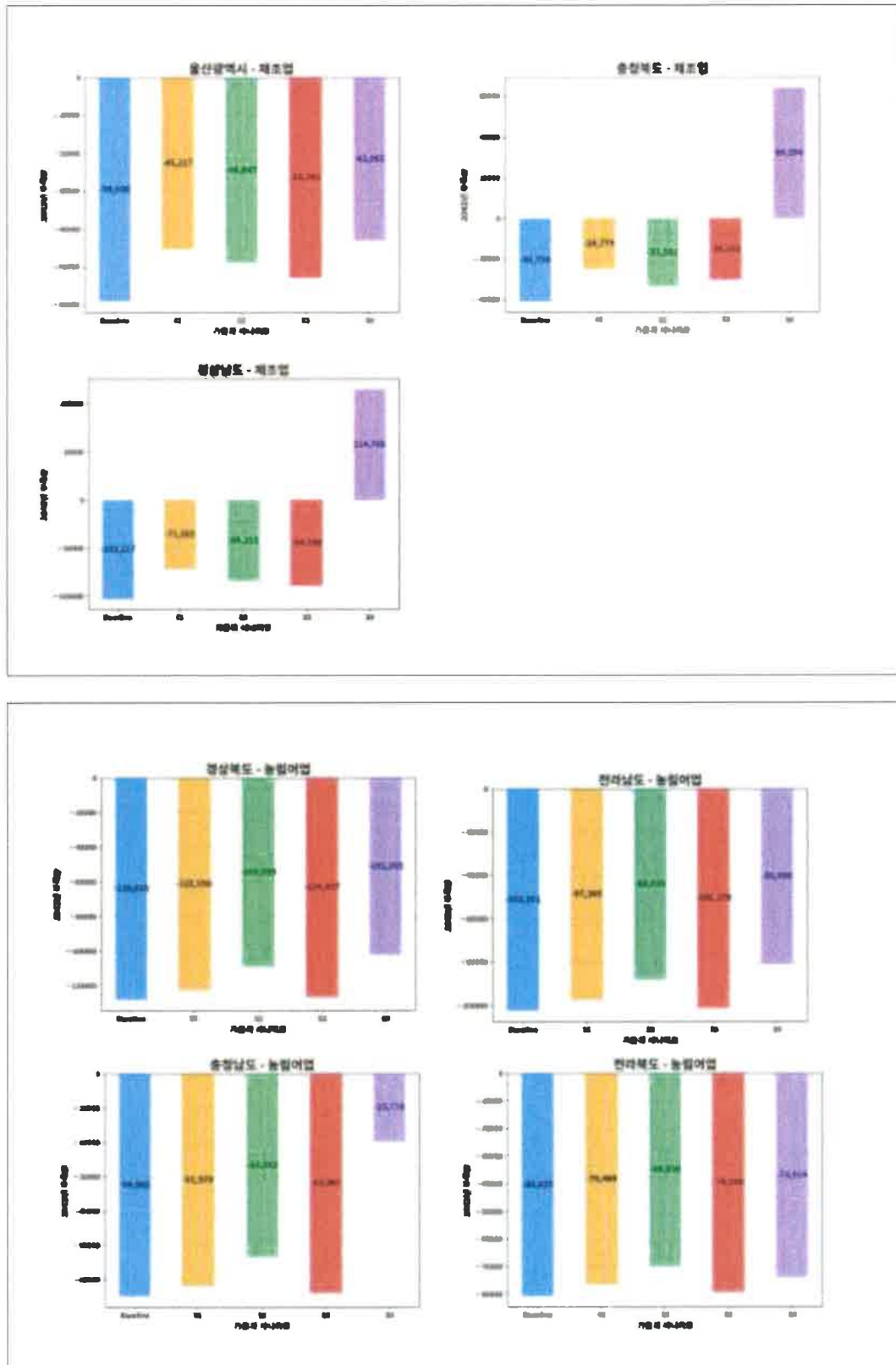
2022~203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2022~204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외국인력은 지역/산업 수급 불균형 해법인가? 시뮬레이션 분석 (이철희 2026)

- 정책 시뮬레이션: 특정한 전국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성과를 얻었을 때의, 가상적인 지역 노동인구 불균형 변화
 - 2042년까지 다음 특성별 인구 취업률이 2022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 ① 25~54세 여성, ② 50~64세 장년, ③ 20~34세 청년
 - ④ **2042년까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 증가**
- 방법
 - 위의 시나리오 실현 시 전국적인 취업자 증가 규모 추정.
 - 증가한 취업자가 2022년의 시도 및 산업별 취업자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
 - 각 시도/산업 노동인력 부족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석.
- 결과
 - 산업별/지역별로 외국인력 확대의 효과성 차이
 - 특정 산업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상이함



2.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 정책

- 2023년의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규모 유지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 확대 → 외국인력 필요한 분야



요양보호사 외국인인력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 인력의 규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은 최근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그러나 외국인 인력 유입 정도는 제한적으로 전체 인력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 대응에 한계

[그림]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추이



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자료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귀화한 경우도 외국인으로 분류함.

출처: 이철희, 권정현, 김태훈 (2025)

요양보호사 인력 지역별 전망

- 지역별 고령화 정도와 경제활동참가 인구 규모의 격차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정도의 지역별 격차가 확대 전망 → 지역별 배분을 고민할 필요

[그림]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



요양보호사 외국인인력 지역별 배분

- 지역별 분포
- 외국인 인력의 수도권 지역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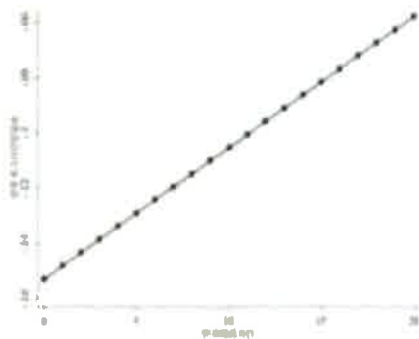
	내국인 인력		외국인 인력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16	45.50%	54.50%	73.00%	27.00%
2017	45.30%	54.70%	72.60%	27.40%
2018	45.20%	54.80%	72.70%	27.30%
2019	44.40%	55.60%	73.80%	26.20%
2020	44.10%	55.90%	74.50%	25.50%
2021	44.00%	56.00%	76.20%	23.80%
2022	44.00%	56.00%	77.40%	22.60%
2023	44.10%	55.90%	77.40%	22.60%

출처: 이철희, 권정현, 김태훈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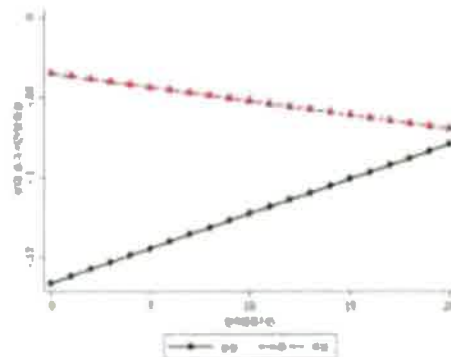
3. 적정 임금 요건 설계

- 직종, 지역,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적절함.
- 같은 직종, 지역 내 외국인력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면 더 정교한 모형 설계 가능할 것.
 - 특히 학력, 체류 기간 등 인적 자본 특성에 따른 생산성 차이 고려 필요.
- Kim and Lee (2022)
 - 체류 기간 길어지면서 동화(assimilation)의 효과로 생산성 (임금) 상승.
 - 동화의 영향은 성별 출신 국가 등에 따라 다름.

외국인력의 경제적 동화 분석 (Kim and Lee 2022)



체류기간-상대 임금 궤적



성별 체류기간-상대 임금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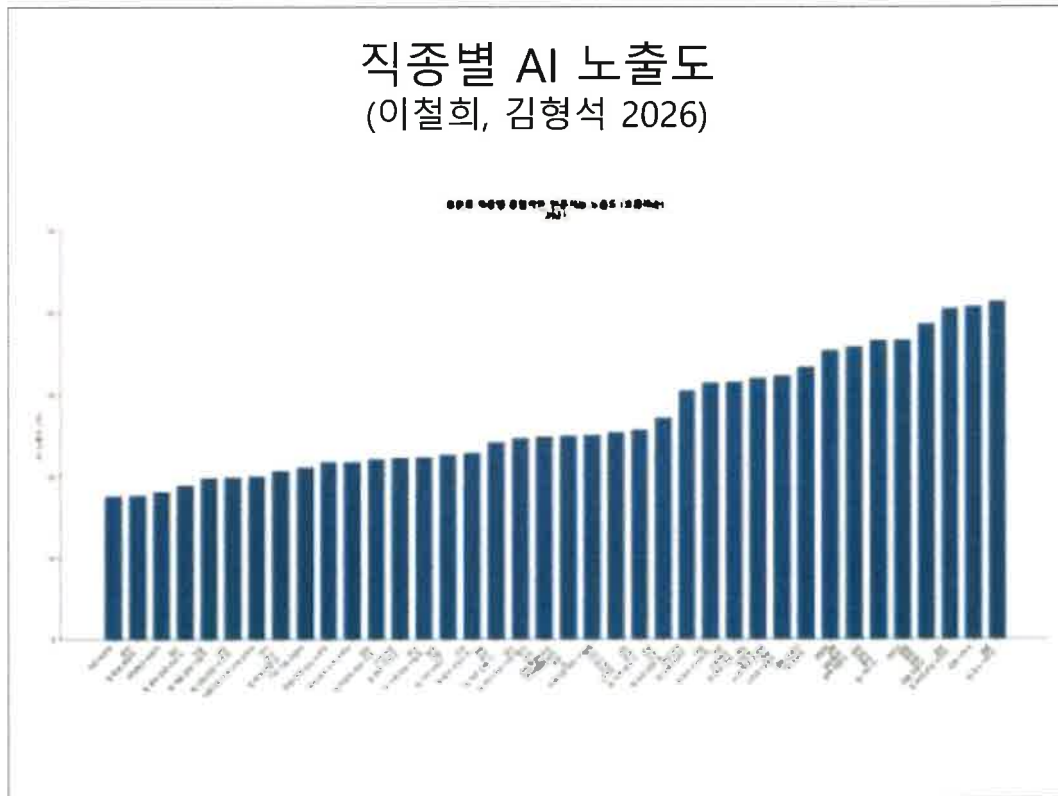
3. 적정 임금 요건 설계

- 직종, 지역,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적절함.
- 같은 직종, 지역 내 외국인력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면 더 정교한 모형 설계 가능할 것.
 - 특히 학력, 체류 기간 등 인적 자본 특성에 따른 생산성 차이 고려 필요.
- Kim and Lee (2022)
 - 체류 기간 길어지면서 동화(assimilation)의 효과로 생산성 (임금) 상승.
 - 동화의 영향은 성별 출신 국가 등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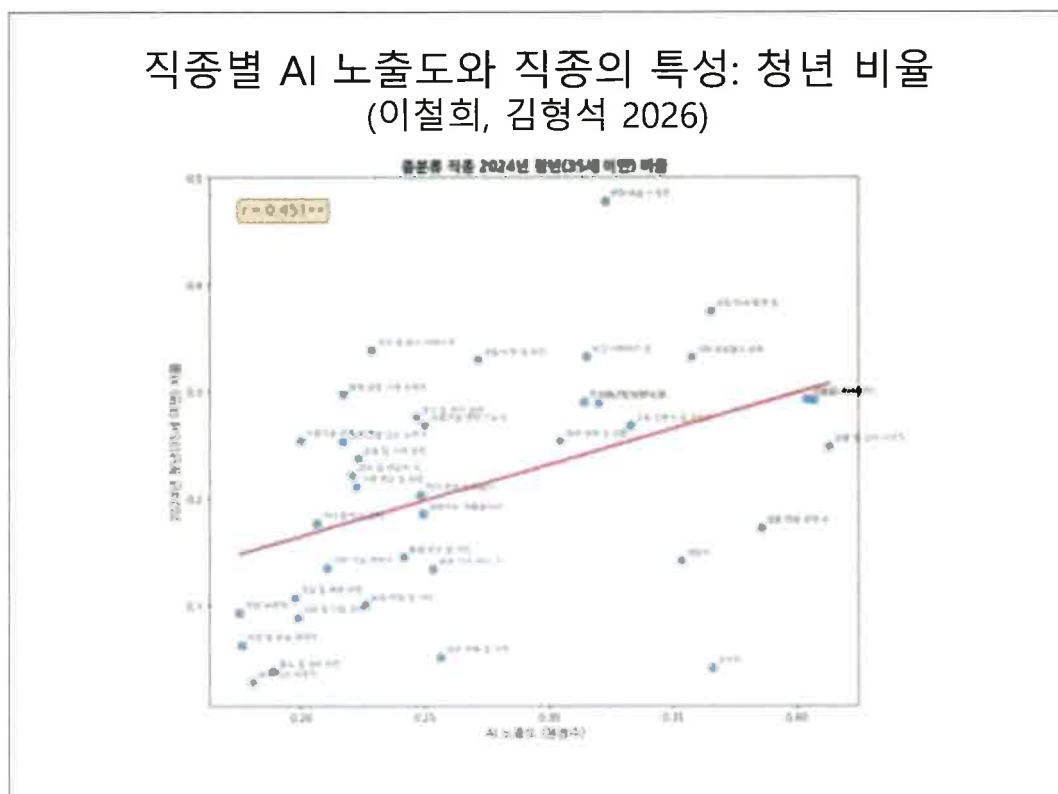
4. 최고급 및 전문 인력 확보 노력

-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노동시장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교육/훈련/노동시장/외국인력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급 외국인력 유치보다 내국인 인력 유출과 낭비를 막는 정책 개혁이 우선이라고 판단함.
 - 많은 청년 고급 인력과 전문직 인력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
 - 한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귀국하지 않을 의사 있음.
 - 낮은 청년 고용률과 '쉬었음' 청년 증가
- 인공지능 도입 및 확산으로 인한 고급인력 대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고임금, 고학력, 청년 인력 대체 예상됨
 - 인구와 산업 변화로 인력이 부족해지지만 기술 도입을 통한 대체 가능성 낮은 일자리 식별 → 외국인 정책에 반영

직종별 AI 노출도 (이철희, 김형석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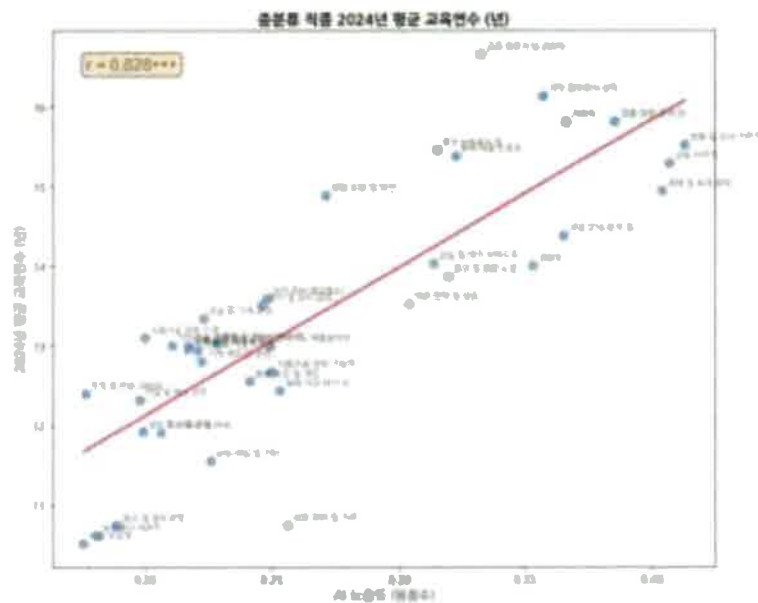
직종별 AI 노출도와 직종의 특성: 청년 비율 (이철희, 김형석 2026)



직종별 AI 노출도와 직종의 특성: 평균 임금 (이철희, 김형석 2026)



직종별 AI 노출도와 직종의 특성: 평균 교육연수 (이철희, 김형석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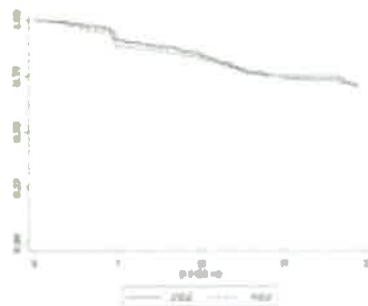


‘공급 측면’ 고려한 외국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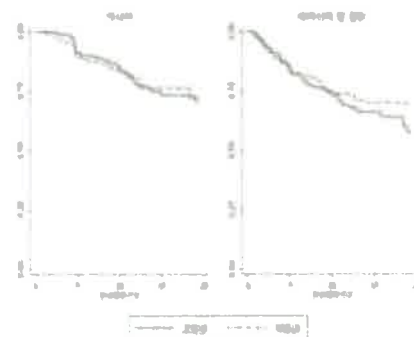
-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을 고려해야 함.
 - 한국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력이 더 일찍 떠나는 경향 (Kim and Lee 2022)
 - 우수 인력을 선별적으로 장기 체류,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인력 유입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 국제노동시장에서의 경쟁 → 위상 제고 노력: 인권, 처우, 전망 개선
 - 송출국의 경제 및 인구 변화 모니터링
 -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

외국인력 출국 확률 분석

(Kim and Le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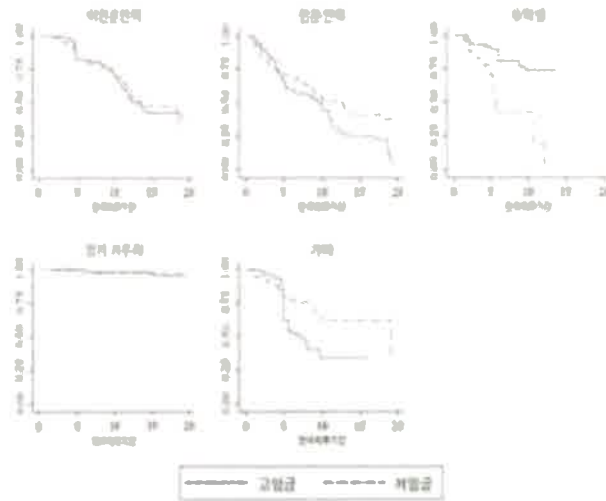


임금집단별 생존함수



임금집단별 생존함수 (출신국가별로)

외국인력 출국 확률 분석



임금집단별 생존함수 (체류자격별)

감사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정토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종관 교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

이종관 (연세대학교)

2026년 4월 22일(수)

2030 이민정책 전반적 평가

- 성장 동력으로서의 이민자 중요성 인식, 패러다임 전환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유입을 설계할 것인가?

- 외국인재 유치, 유학생 정착, 서비스업(돌봄 등)으로의 확대
 -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됨
- 반이민정서나 사회통합 등에 대한 논의 포함도 긍정적
- 비자정책, 기존 외국인 활용에 대한 세부적 고민은 필요

발표1: 해외인재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 이민자 유입의 다양한 경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완성형 인재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선제 확보



육성형 인재

교육·훈련으로 국내에서 직접 양성·정착

- 특히, 비전문취업(E-9)의 유입-성장/정주-영주/정착으로의 경로 개발은 긍정적
- 다만, 핵심은 각 단계별 얼마나 행정적으로 원활할 수 있는지
- 비자체계 개편을 노동시장과 연결한다는 점도 긍정적
 - 현재/미래에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부문과 외국인 노동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통해 노동시장을 설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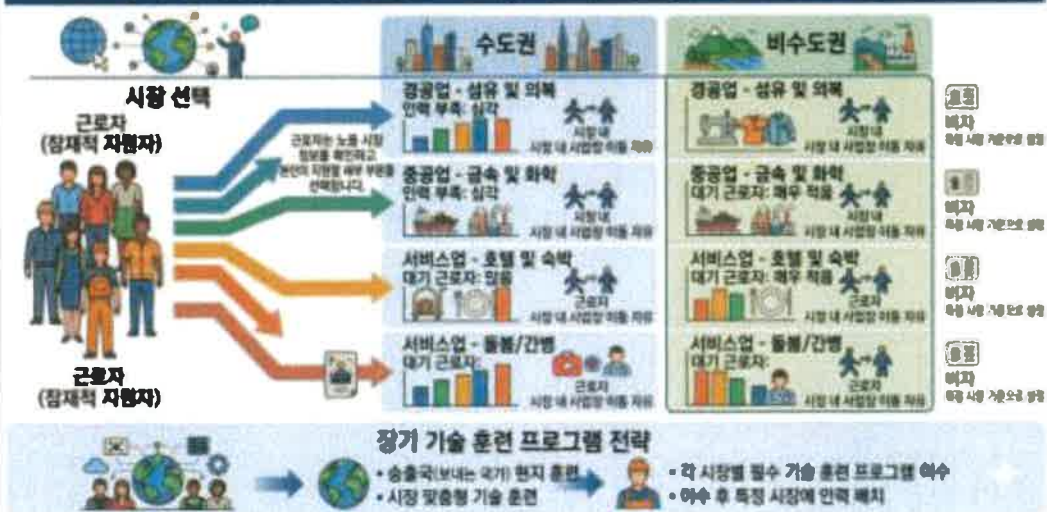
노동시장 설정과 비자정책 제언

- 투 트랙 전략이 필요
 - 완성형 인재(~고숙련)의 경우, 가능한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
 - 육성형 인재는 그동안 갖춰온 제도적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반적 개편 및 부처간 협의 필요 (예: 고용허가제)
- 육성형인재 비자체계는 [산업 X 지역] 접근이 타당
 - 노동자의 숙련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 비자정책의 핵심은 결국 “노동시장”을 설정하는데 있음.
 - 부족한 노동시장에 노동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역이 고려될 필요
 - 한편, 현재 “입국” 단계(E-9)의 경우 시장 매칭 기능 X
 - 잦은 이탈, 비합법체류, 인권, 사업체의 구인난 등 복합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

지역과 산업을 고려한 비자정책

- 고용허가제 비자를 지역과 산업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시 선택하게 하는 방법
 - 외국인의 시장 선택권 보장 및 긴 대기시간 해결
 - 빨리 들어온 후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vs. 천천히 들어와도 정착하고 싶은 사람
 - 예: 광역권(6개) * 제조업(2개) * 서비스업(2개)
 - 각 시장은 다른 숙련(skill)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설정
 - 용접공과 돌봄노동은 분명히 다른 숙련이 필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 한국어능력, 기술, 자격증 등에서 차이
 - 각 클러스터 안에서 일정 기간 이후 사업장 이동을 허용
 - 입국 → 정주 → 영주의 단계 설정도 용이

지역 및 산업별 세분화된 EPS(고용허가제) 노동시장 모델 예시



발표2: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 설계

- 인력부족 규모 및 노동시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접근 긍정적
 - 단, 세밀한 분야의 전망 정확성에 대한 고민
- 노동시장 연구 대부분은 이민자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 X
 - <https://www.nationalacademies.org/read/5779/chapter/6>
 -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유입 외국인 유형을 고려할 때 분포상 + 에 위치함
 - 그런 의미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
- 여러 의미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더 중요함.
 - 특히, 법무부는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국인의 인구이동, 국민의 수용성, 사회/문화/정치/종교 등에 대한 영향 및 인식이 훨씬 중요

발표2: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 설계

- 현재 접근은 외국인의 “유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30이민정책에서 강조한 또 하나의 다른 축:
“다른 민족·문화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 질문을 조금 바꾼다면, “누구를 정착시킬 것인가?”
- 유입 → 정주 → 영주의 각 경로에서 기준이 필요
 -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술 등의 설정
 - 임금 보다는 자격요건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일부 그룹(예: 유학생)은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필요
 - 언어능력 및 취업 전제로 정주화 필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캐스퍼 클라센 선임연구원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에서“어떤 이민국가를 만들 것인가”로

Casper Hendrik Claassen,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두 발제는 한국이 이주민을 선별·입국·분류·유지하는 제도적 틀을 다룬다.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는 법무부 이민정책 빅데이터과장 김민경 과장의 발제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인력부족 추계 모형, 그리고 다변수 기반 임금요건 설계를 제안한다.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향숙 과장의 발제로, 기존의 직종 중심 체계를 산업×숙련도 매트릭스로 재편하고, 입국에서 성장·정주를 거쳐 영주권에 이르는 전주기적 이민경로를 제시한다. 두 발제는 그간 관찰되어 온 단기적·임기응변적 쿼터 조정 방식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의 의견은, 두 발제가 행정적 문제는 해결하되 정치적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문제란 법무부가 이민 관련 권한을 더욱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설명 가능하고 정당화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문제란 한국이 이주민에게 제도적 소속을 부여하는 이민사회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 제시된 개선안들은 첫 번째 문제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문제를 대체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발제가 가리키는 전환(“얼마나”에서“어떤 이민국가”로의 전환)이 두 번째 층위의 전환인 반면, 제시된 정책도구는 주로 첫 번째 층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발제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각 관찰은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첫째, 사전공표제의 ‘과학적’ 프레이밍은 재량의 소재를 이동시킨다. 지금까지 E-9 쿼터 설정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매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법무부가 주도하고 통합 분석 모델에 기반하는 사전공표제는 그 재량을 하나의 부처와 하나의 방법론에 집중시킬 여지가 있다. 모델에 대한 투명성만으로는 정치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정치적 문제란 모델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누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발제1에 제시된 2030년 인력부족 범위, 즉 제조업 17만 3,700명에서 34만 9,900명, 사회복지업 12만 2,700명에서 24만 5,400명은

그 판단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해당 범위는 정직하게 제시된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의 수치를 선택하는 작업은 계산 자체가 제공할 수 없는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노사정 협의 구조와 제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권한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법론적 개선의 부수적 결과인가?

둘째, 임금요건 개선은 GNI 기반의 일률적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파급효과를 가진 기술적 선택을 포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시장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다변수 기준은 시장임금을 중립적인 데이터로 간주한다. 그러나 저임금이 구조적 저평가에서 비롯된 업종에서는, 동일한 임금이 그 저평가를 재생산하는 정책 투입물로 작동하게 된다. 돌봄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OECD의 장기요양 관련 연구는 여러 국가에 걸쳐 일관되게, 돌봄 부문의 인력부족이 절대적 노동력 희소로 환원되지 않으며 임금, 근로조건, 경력 구조가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임금하한이 내국인 돌봄 종사자의 현재 임금 수준으로 정의된다면, 이 주는 공석을 채울지언정 부문 차원의 문제를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임금하한은 돌봄 부문 개혁을 유보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질문은, 다변수 모델이 '노동력 부족' 시장과 '구조적 저평가' 시장을 구별하는가, 그리고 업종별 하한에 대하여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전주기적 이민경로 설계는 한국이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로 이행하는가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다. 동시에 비자 체계 자체의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얀마 노동자 사례가 보여주는 E-9→D-2→E-7 경로, 그리고 F-2·F-5를 향하는 보다 넓은 경로는 교육을 담당할 대학, 스폰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 기업, 학교와 주거를 제공할 지자체, 그리고 체류 자격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노동감독기관을 요구한다. 이 각각은 한국 맥락에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고리들이다. 의지와 노력 프레임은 책임을 이주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로, 이는 수용사회 측 제도에 대한 책임 귀속보다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다. 동아시아 이주민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들은 전주기적 이주의 가장 강력한 제약 요인이 수용사회 측에 위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략이 달성하고자 하는 체류자격 전환율 목표

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할 책임은 어떤 기관에 있고, 해당 기관들의 성과 모니터링과 부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 세 가지 관찰과는 별도로 두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하고자 한다. 2030년 전략 시점은 독립된 이민 전담 기관(이민청)을 실제로 어떤 형태로, 현행 법무부 체계 내에 둘 것인지 밖으로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다. 발제2의 거버넌스 도형은 법무부를 중심적 결정자로 위치시키고 그 외의 부처 및 기관을 주로 수요 제기자로 제시한다. 이 자체가 이민청 논의 안에서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2030년 전략을 독립기관에 대한 보완으로 보는지 대안으로 보는지 듣고 싶다. 관련하여, 발제2는 영주권(F-5)을 생애주기 경로의 종점으로 제시한다. 귀화는 논의되지 않는다. 이 누락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영주권은 정치적 구성원자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F-5는 체류를 보장하지만, 누가 언젠가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지는 않다. 전략이 F-5를 종점으로 간주하는지 중간 단계로 간주하는지 묻고 싶다. 그 답이 2030년 전략에서 '소속'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정식화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에서 “어떤 이민국가를 만들 것인가”로의 전환은 올바른 방향이다. 두 발제가 강화하고자 하는 입국 단계 설계는 그 전환의 전제조건이다. 그 전환을 완성하는 일은 이민 체계의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 그리고 이민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의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물음에 달려 있다. 오늘 제시된 전략은 아직 그 결정들을 전적으로 내린 단계로 보기 어렵다. 오늘의 토론은 바로 그 난제들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1세션 |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말라 석사과정생



토론문

Gemala Prasetyo,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과정생

육성형 인재 정책은 법무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부와 대학까지 함께 가야 한다. 이민정책은 사람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만이 아니라, 내국인과 지역사회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인구가 많고 젊은 노동력도 많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 청년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적 이동은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육성형 인재 정책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연결할 것인가이다. 육성형 인재 정책은 입국에서 끝나면 안 된다. 교육, 언어, 취업, 정착까지 이어져야 한다. 즉 사람을 먼저 데려오는 정책보다, 먼저 준비시키고 그다음 연결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유학생은 매우 중요하다. 유학생은 단순히 한국에 와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도 있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있다. 또 서울대는 K-STAR 비자 트랙 대상 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고 사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행정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부처 간 조정과 정책 연계의 문제이다. 법무부는 비자와 체류를 담당하고, 교육부는 유학생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은 실제 교육과 생활지원을 담당한다. 이 세 주체가 함께 움직여야 입국 전 준비부터 졸업 후 취업과 정착까지 더 안정적인 경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교육부, 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공동 경로가 더 필요하다.

제 학부 대학도 한국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대학 사이의 협력이 늘고 있고, 한국어 교육, 학생 교류, 공동연구뿐 아니라 보건과 간호 분야 인력 양성과도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기초 교육과 한국어를 배우고, 이후 한국에서 추가 교육과 실습, 자격 취득, 취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런 경로는 육성형 인재 정책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민정책은 결국 함께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인을 받는 정책은 결국 지역사회와 내국인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비교적 단일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용 문제를 더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도네시아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국적의 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의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사회가 다양하다고 해서 갈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다. 2030년에 분위기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내국인의 수용성을 높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지역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민정책 추진체계와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세션2에서 더 깊이 논의될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한국에 오는 인도네시아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2024 출입국 통계연보를 봐도, 인도네시아인은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특정활동, 유학 등 여러 경로로 한국에 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입을 설계할 때는 단순한 총량만이 아니라, 어떤 경로의 인력을 어느 분야에 연결할 것인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더 새롭고 더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옮기기 편한가만이 아니라, 산업과 업종이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사람을 현재 업종에만 너무 강하게 묶어 두면, 정작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는 사람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필요한 분야가 더 유연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최근 산불 현장에서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 사례도 매우 상징적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비자가 F-2로 바뀌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실제 기여를 제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유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두 방향으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육성형 인재 정책에서 법무부, 교육부, 대학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민정책을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니라, 내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공무원으로서, 좋은 이민정책은 좋은 의도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부처 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사람을 먼저 데려오는 정책보다, 먼저 준비시키고 그다음 연결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발제 1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 고도화

법무부 강영우 이민통합과장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이민통합과



CHAPTER 1

국내 이민정책 환경: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

CHAPTER 1 국내 이민정책 환경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

| 20명 중 1명은 외국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 증가

| 단순 체류를 넘어 정주형 가족 단위로:
이민 2세대 및 정주형 외국인의 급증



사회통합 요구의 증대

CHAPTER 2

이민정책의 국가전략: 다른 민족·문화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비전, 목표, 그리고 전략의 기본방향

CHAPTER 2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

“다른 민족·문화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기반의 이민정책

목표

“회복”을 위한 포용 정책

전략 기본방향

사회통합과 권익보호 촉매로서의 이민정책

성장시대 (과거)

- 외국인인 단순 관리 대상
- 일방적 국가 지원
- 사회통합은 외국인의 선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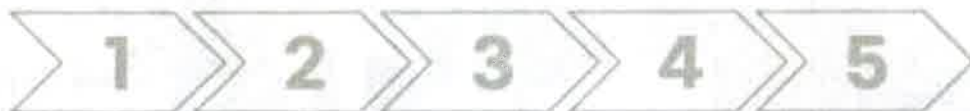


축소사회 (미래)

- ✓ 연관이 분열되는 사회 구성원
- ✓ 상호 협력 및 국가 지원
- ✓ 외국인의 책임 및 통합 의무 부과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실행 방안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1] 반(反) 이민정서 대응 · 갈등 중재 및 외국인 인권보호

“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확산, 정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제도적·사회적 대응은 미흡

”

- ✓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하여 **갈등예방의 해법 모색**
- ✓ 사회통합지수 활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고 국민인식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
-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를 통해 국민의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활동 추진
- ✓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 권익보호TF 신설**(‘26. 3.)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2] 외국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충

“

임금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권익 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 미비**

”

-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제도화)** 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 창구 상설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
- ✓ 지방 출입국관서별 ‘이민자 권익보호관’을 지정하여 신고 창구 상설화
- ✓ 근거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26. 3.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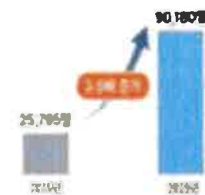
[과제3] 장기거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및 참여 촉진

“

- 체류외국인 증가와 체류유형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접근성이 부족
- 일하는 평일에 몰린 한국어 수업, 이주 노동자 발동등(25. 3. 강원 MBC)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추진
- ✓ 체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AI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반 마련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3-1]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추진

장기거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 정주형 재류자격부터 일정 단계 이수 조건 필수 부여
- 체류기간 및 목적별 요구 수준에 따른 단계적 의무화 확대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3-2] 체류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3-3] 사회통합프로그램 AI기반 온라인 교육 확대 추진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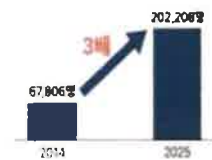
[과제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성장 지원

“

- 이주배경 학생규모가 지속증가 중이나,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부모 일터 따라 한국 온 아이들 “말 못 알아들어 학교가 괴로워요.”(25. 10 한겨레)

”

< 이주배경 학생 규모 변화(출처: 교육부) >



-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시간 및 랭귀지스쿨(3곳)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활용하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 지원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에 ‘이민2세대 성장 지원분과’를 운영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4-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및 통계 기준 정립

“

동일한 용어를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통계 기준 상이 및 정책 대상 사각지대 발생

”

부처	사용 용어
법무부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이주배경
행정안전부	외국인 아동 / 외국인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아동 / 외국인 청소년
교육부	이주배경 아동

- (1단계) 용어·통계 정비 로드맵을 구성하여, (2단계) 용어 표준화 및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3단계) 법령 정비 등 근거 마련 추진
- 부처별 아동·청소년의 대상 범위에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연령별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 밖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지원 등 정착 단계별 체류 기반의 성장 관리로 안정적 국내 정주 지원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5] 사회통합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

- 국민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 반감 및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속성 확보 곤란
- “왜 내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가?”

”

- ✓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별도의 기금 신설 추진(중장기 검토)

※ '25. 12. 23.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내용이 포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

CHAPTER 3 핵심 추진 과제

[과제5-1] 사회통합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해외사례)

 미국 (USA)	 캐나다 (Canada)	 유럽연합 및 독일 (EU / Germany)
▪ 기금명 : 이민심사수수료 계정 (Immigration Examinations Fee Account) ▪ 규모 : 약 8조 4,000억원(24년 기준) ▪ 특징 : 외국인이 부담하는 이민 관련 수수료를 징수 및 예치하여 이민국 업무에 활용	▪ 기금명 : 영주권 정착 수수료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RPRF) ▪ 규모 : 약 1,600억원(24년 기준) ▪ 특징 : 비자심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시 승인되면 심사수수료외 별도 징수	▪ 기금명 : (EU)난민이주기금(AMF)/ (독일)난민이주통합기금(AMIF) ▪ 특징 : 역내 난민 및 이민자의 체계적 통합을 위한 재원 운영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발제 2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무부 이재형 외국인정책과장



2026. 4.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방안

국내 이민정책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이민행정 컨트롤타워 구축

278만

재류외국인 ('25)

20년+

실정급 체계 유지

목차

I	추진 배경 체류외국인 증가, 인구위기, 선진국 이민정책 동향
II	기존 체제의 문제점 이민행정 인프라 부실, 부처 겹겹 미흡, 지역 거버넌스 부재
III	이민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외국인력 유입 요구, 사회통합정책 확대
IV	차관급 승격 추진(안) 차관급 본부 타당성, 지역기반 이민정책, 이해관계자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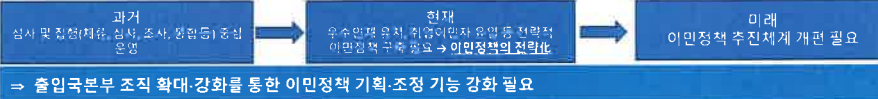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국내 환경 변화

- 체류외국인 급증: '08년 116만 → '25년 278만 → '30년 300만 ↑ 예상
- 인구위기 지역소멸 심화로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 시급
- 이민정책 전담 조직 '07년 실장급 승격 후 20여 년 체계 유지
- 현행 2단 11과 119명 체계로 정책 수요 대비 역량 한계

해외 이민정책 동향

- 선진국 중심 숙련 우수 외국인력 유치 경쟁 심화
- 일본('19년), 대만('07년), 중국('18년) 등 “차관급” 전담조직 설치·운영
- 필요인재 확보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이민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필요



II 기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의 문제점

1

이민행정 인프라 부실

체류외국인 급증에도 기획·총괄 본부 조직은 '07년 수준 유지. 출입국청·사무소 등 일선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농어가·대학 불편 호소 및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부족

2

부처 협업 미흡

법무부는 이민전담부처 및 외국인정책위원회 간사 부처로서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하나, 고용부(고용허가제), 성평등부(다문화가족), 재외동포청 등 각 부처가 개별 추진 정책 조율 및 사회문제 적시 대응 한계

3

지역 거버넌스 부재

지역중심 외국인력 도입 확대 요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수요 증가 중, 이를 다룰 거버넌스 부재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부족

4

국제 협력 및 국내 정책 참여 한계

(국제) 해외 주요 이민기관은 대부분 차관급 수준으로 운영되나, 현행 체계(1급)는 대등한 대외 협상 수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국내) 국무회의, 자관회의 등 핵심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1급(실장)은 참여가 제한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시 도지사 등 지방 최고 책임자와의 협력에는 차관급 위상이 요구됨

II 기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의 문제점 (2)

5

대국회 상임위 구조 – 출입국 법안의 우선순위 후퇴 위험

현황

법무부 소관 상임위(법사위)는 차관급이 대응.
법무부는 검찰·교정·인권·범죄예방 등 다부처적 성격 보유

문제점

법안 심사 시 출입국·이민 관련 법안이 검찰 형사·인권 등 타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 후퇴 가능성이 높음 → 이민 전담 차관급 필요

6

외국인정책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 실무위원장은 차관급



III 이민정책 추진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인구소멸·지역소멸 심화 →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

① 취업이민자 적극 유입

- 생산가능인구 급감 지역소멸로 외국인력 도입 불가피
- 저임금 인력 지속 도입 시 일자리 잠식 임금 하락 우려
- ❶ 적정임금 기반 외국인 활용 필요
- ❷ AI 활용 축소사회로의 변화 종합 고려 필요

② 사회통합정책 확대

- 체류외국인 급증 유형 다변화로 사회통합 요구 증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예산부족
- ❶ 사회통합기금 조성 ❷ 이민 2.3세대 지원
- ❸ 이민당국 중심의 사회통합정책 추진과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

IV 차관급 본부 설치의 타당성

1

법무부 기존 인프라 활용 — 예산 절감 및 관계기관 설득 용이

예산 절감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등 법무부 내 기존 지원 조직의 기능을 통합 활용 → 독립 외청 대비 행정 비용 최소화

관계기관 설득 용이

타부처 기능 이관 없이 기존 조직 역량 강화에 방점 → 고용부·여가부·행안부 반발 가능성 낮음

“국무위원” 지위 적극 활용

부 내 조직으로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직접 참여 → 국가적 정책 형성 및 법무부 정책조정에 유리

2

집행·기획 통합 기능 필요 → 법무부 내 차관급 격상이 가장 현실적 대안

집행 중심 정(廳) 설치	기획 중심 처(處) 설치	법무부 내 차관급 본부
단속 심사 출입국 집행에 특화되나 중장기 이민정책 기획 조정 기능 수행 한계	정책 입안 역량은 있으나 현장 집행력 법집행 권한 부재로 실효적 정책 추진 한계	집행(심사, 체류 등) + 기획(이민전략, 사회 통합, 국제협력) 알 기능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 수행

⇒ 출입국 이민정책은 집행·기획 기능이 모두 요구 → 법무부 내 차관급 격상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차관급 본부 설치 시 이해관계자별 기대효과

국민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 유입 방지, 체계적 관리로 사회갈
등 완화 및 외국인 정책 신뢰도 상승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임국 체류 제도 개선을 통한 비자·체류 절차 간소화, 취업·주
거·교육 정착 지원 강화

산업계

인력난 해소, 비자 제도 유연화로 산업 별 맞춤형 인재 확보
가능

중앙정부

정책 효율성 극대화, 중복 비효율 제거, 부처 간 갈등 감소
및 국가 이민전략 실행력 강화

차관급 본부 설치 → 법무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선진 이민국가 도약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지정토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창용 교수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

최창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질서를 시험하는 중층적 난제

○ 한국에서 이민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나 특정 부문 정책의 하위 의제가 아니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산업구조 재편, 교육현장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적 충돌이 교차하는 복합적 국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민정책 수립은 단지 '외국인의 유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회질서와 통합원리를 채택할 것인가를 묻는 헌정적·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론적 관점에서도 이민은 어느 한 학문이나 부처의 언어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음. 예컨대, 정치학은 이민을 국경, 시민권, 구성원의 자격, 공동체의 정당성 등의 문제로 해석하고, 경제학은 노동공급, 생산성, 재정, 인구구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사회학은 차별, 낙인, 배제, 신뢰, 관계적 통합의 문제를 제기함. 또한 정책학은 상이한 정책수단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행정학은 조직, 권한, 재정, 집행역량, 다부처 거버넌스의 문제를 전면화함.

⇒ 따라서, 이민정책은 출입국행정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전략·사회통합·행정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임.

□ 동화(Assimilation) vs. 통합(Integration)

○ 이민정책의 심층에 하나의 규범적 선택이 놓여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언급할 수 있음: 이민자를 다수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시키는 동화의 모델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의 모델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임.

○ 동화적 관점은 이민자가 다수사회의 언어, 규범, 문화, 행태에 점진적으로 동일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는 비교적 단순한 정책목표를 제공

하지만 이 접근은 사회 적응의 부담을 이민자 개인에게 전가하기 쉽고, 적응의 속도나 방식이 다를 경우 이를 곧바로 미적응 혹은 실패로 해석하는 경향을 낳음. 그 결과, 동화 패러다임은 외견상 통합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제와 낙인의 언어로 쉽게 전환될 위험을 내포.

○ 반면 통합적 관점은 이민을 상호적응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핵심은 차이의 소멸이 아니라, 차이를 전제로 한 공존의 제도화임. 다시 말해, 통합은 공적 질서와 법규범, 기본적 시민규범을 공유하되, 문화적 배경과 생활양식의 다층성을 인정하면서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질서를 뜻함. 통합은 방임도 아니고 동일화도 아니며, 갈등을 관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면서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국가의 능력이라 할 것임.

□ 이민사회 성숙도: 수용의지(Willingness to accept)와 지불의지(Willingness to pay)

○ 이민자 수용의 성숙도를 논할 때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수용의지와 지불의지라고 할 수 있음. 수용의지는 이민자를 이웃, 동료, 학부모, 주민,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할 심리적·문화적 준비의 정도를 뜻함. 이는 단순한 호감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를 곧바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안정성과 성숙도를 의미함.

○ 지불의지는 그 수용을 실질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회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개념으로, 이민자 통합은 한국어 교육, 학교 내 기초학력 보완, 상담 및 통번역, 노동권 보호, 주거·의료 접근성, 지역사회 갈등 조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권익 구제 체계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공재정과 행정역량을 필요로 함. 법무부 발제자료가 사회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별도 과제로 설정하면서 “왜 내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반감을 정책적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지불의지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성숙한 이민사회는 수용의지와 지불의지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라 할 것이며, 이민자를 인간적으로 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통합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도덕적 수사에 그칠 것이며, 반대로 산업현장의 필요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을 공동체의 동등한 일

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동원에 불과할 것임. 결국 이민자 수용의 성숙도는 사회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용성과 그 수용을 제도화할 책임의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한국의 이민행정은 여전히 관리 중심이며, 통합 역량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 거버넌스 재설계의 방향: 청·처 신설보다 법무부 내 차관급 이민·사회통합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임

○ 이민과 사회통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임.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의 상징성이 아니라, 정책의 조정력과 집행력, 그리고 범정부적 설득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청이나 처의 신설은 각각 장단을 지니지만, 정부개혁 필요성과 재정지출구조조정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최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행 이민행정은 심사, 체류, 단속, 출입국 집행 등 관리 기능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현실은 이미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주 외국인의 증가, 체류유형의 다변화, 이민 2·3세대의 형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확대는 이제 사회통합을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핵심 기능으로 요청하고 있음.

○ 청 신설은 단속, 심사, 출입국 집행 기능의 강화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이민정책의 핵심이 더 이상 출입국 집행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국가전략, 사회통합, 지방정부 협력, 교육·복지·노동 부문과의 정교한 조정으로 확장된 이상, 청 단위 조직은 기능적으로 집행 편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처 신설은 기획과 조정의 상징성은 가질 수 있으나 현장 집행력과 법집행 수단의 결여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큼.

○ 반면 법무부 내 차관급 체계는 기존의 출입국·체류·심사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이민전략·사회통합·국제협력·권익보호를 단일 지휘체계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특히 발제에서도 강조했듯이 최고 정책결정 수준에서 법무부 내 차관급 체계의 강점은 첫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조직 신설에 따른 전환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둘째, 타부처 기능을 전면 이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제도적 저항과 부처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셋째,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 지위와 결합될 경우 범정부 조정

과 국정 의사결정 구조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속할 수 있음.

□ 동화가 아니라 통합, 기능적 수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수용으로 이행

○ 이민은 한국 사회의 당면한 난제이나, 그 난제의 본질은 외국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다루는 국가의 방식과 공동체의 성숙도에 있음. 한국 사회는 이미 장기거주와 정착, 자녀세대의 성장, 지역사회 공존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미래의 갈등을 현재의 행정편의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할 것임.

○ 따라서 정책적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동화가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둘째, 선언적 관용이 아니라 수용의지와 지불의지를 함께 갖춘 책임 있는 수용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회통합을 출입국행정의 부속기능이 아니라 국가의 중추 기능으로 재정의하면서, 넷째, 이를 총괄할 거버넌스는 청·처 신설의 상징성보다 법무부 내 차관급 이민·사회통합 체계의 실질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발제에 감사드리며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차관급 격상이 단순한 위상 조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재의 출입국·체류 관리 기능과 사회통합·권익보호 기능을 법무부 조직 내에서 어떻게 분리·재편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유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가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경우,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기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능 중첩과 책임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정 권한은 어디까지 확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회통합 재원을 외국인 수수료나 기금 중심으로 마련할 경우, 취약한 이주민에게 통합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설계 원칙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지정토론

(주) 코레아니시마 카를로스 고리토 대표



2030 출입국·이민 정책: '자원'의 관리를 넘어 '이웃'의 공존으로

카를로스 고리토 | cgorito@gmail.com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국가적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올 외국인과 저를 포함해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발표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 동안 법무부 멘토단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겪은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발제자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의 변화와 제도의 보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5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점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이 과정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 사이 학생들의 질문 수준, 학습 태도, 참여 열의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이민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약 2만 5천 명에서 2025년 약 9만 명으로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온 한계는, 정책·교육·정보·인프라의 변화 속도가 참여자들의 현실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발제에 포함된 '장기거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학습 유연성을 높이는 '정규학점 45시간 축소', 근로와 학습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24시간 AI 기반 온라인 학습망 구축'은 이러한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콘텐츠와 함께 소속감과 자기효능감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병행될 때, 참여자들의 잠재력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관심의 한계와 지속적 통합의 과제

저는 200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이 외국인을 다소 낯설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디어가 외국인을 다루는 방식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같은 표면적 호기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관심(Novelty)이 사라진 이후가 오히려 중요한 시점입니다. 외국인이 필요한 시기에만 수용되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비전이 외국인을 단기 체류자나 특정 산업군의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주민'이자 국가 성장 자산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반이민 정서를 예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토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 시대의 인재상과 신뢰(Trust) 기반의 평가

오늘날은 회계, 프로그래밍, 의료 등 전문직의 일부 영역조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논의되는 시대입니다. 비자 체계 개편안에 명시된 것처럼 고숙련(Highly-skilled) 분야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향후 5년, 10년 뒤 한국 사회를 지탱할 또 다른 축은 간호, 교육, 돌봄처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이 되는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러한 인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발제 내용 중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그 가족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통해 전문 돌봄 인력(E-7-2)으로 육성하고 체류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수요와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향후 생체정보와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 출입국심사가 방대한 서류 스크리닝을 대체하게 된다면, 심사관들은 정량적 지표 분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생활 궤적, 정착 의지,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 전략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용하는 우수 기업에 'K-Trust'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접근입니다. 이러한 '신뢰(Trust)'의 프레임워크는 개별 이민자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이력서상의 스펙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봉사나 시민적 참여와 같은 '신뢰의 궤적'을 함께 고려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수반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스마트 행정

현재 출입국 사무소 현장 직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8월 K-ETA 출범식 때의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행사 후 장관님과의 티타임을 앞두고 저를 안내해 주시던 계장님께 장관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여쭙봤습니다. 계장님은 "카를로스 씨, 요즘 업무량이 너무 늘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힘듭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티타임 중 장관님께 그대로 전달했으나, 현장의 고충이 갑작스럽게 논의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단속 인력 1인당 약 1,000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당시의 그 계장님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를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이민 인프라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할 행정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발제에 포함된 AI 기반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과 지능형 자동출입국심사의 전면 도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분절된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유연한 자원 배치를 가능하게 할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민자 체류허가 심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역시, 자국민의 조세 부담 없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지역 수요 기반의 유연한 인력 정책

최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을 외국인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강남 자가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스미스 씨 이야기' 정도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지방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나 '서울 연극 무대에서 춘향전을 연기하는 외국인 예술가의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이들은 핵심 산업과 문화 영역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구조적 제약과 획일화된 기준 탓에 그 기여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적정 임금을 고시하려는 정책은 한국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논의가 획일적인 단일 소득 기준 설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 현실적인 물가와 외국인이 창출하는 사회적·문화적 기여도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Top-down) 접근을 넘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상향식(Bottom-up)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문대학 유학생을 지역 핵심 산업에 연계하는 'K-CORE' 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는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회, 사람, 그리고 공동체

2년 전 5월 20일, 과천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행사의 MC를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각 전문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 기여해 온 외국인들의 삶과 업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 감동의 무게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 무대 위에서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지역 사회와 수많은 한국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온 분들의 발자취를 접하며, 이 무대의 주인공이자 사회적 조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앞서 걸어간 분들의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민자는 비자를 통해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

초기 단계에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공동체와 공유하며 성장하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산업, 보건, 교육, 첨단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이민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전문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이민자 또한 상호 협력과 통합의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 자원 관리의 관점을 넘어, 서로의 삶에 기여하는 '이웃'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그 여정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제2세션 |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통합할 것인가”

지정토론

이민정책연구원 김화연 부연구위원



토론문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토론

국내 이민정책은 이제 더 이상 단기 체류외국인 관리에 머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발제문이 지적하듯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정주형 가족단위 이민자, 그리고 이민 2세대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제시하는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기조와 세부 추진과제의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외국인을 단순한 체류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보고, 사회통합과 권익보호를 이민정책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집행수단의 구체화, 전달체계의 정비, 부처 간 연계 및 현장 기반의 거버넌스 설계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정책 방향 자체보다 그것을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23개소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그리고 장기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추진은 방향 자체로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단순한 지정 기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지역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실행 기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교육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맞게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즉 AI 기반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오프라인 교육공간 확충, 강사 인력 확보, 주말·야간반 확대 등 물리적 인프라 보강이 병행되어야 정책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부처 간 협업과 중앙-지방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령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

로는 한계가 분명한 대표적 영역이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는 부처별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고, 그 결과 통계 기준의 불일치와 정책대상 누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용어와 통계 기준을 정비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려는 로드맵은 매우 적절하며, 향후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용어 정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 아동·청소년센터 간 정보 공유와 사례 연계가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셋째, 향후 사회통합정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지표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사회통합지수의 개발과 측정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음에도,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민자 통합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통합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연구기관이 정책 설계와 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개방·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지역 단위 연구와 정책 실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제문에서 반이민정서 강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짜뉴스 확산을 지적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허위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더욱 정교하고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정책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이 문제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기술적·제도적 고민**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법적 대응, 플랫폼 및 AI 환경에 대한 기술적 대응, 그리고 공적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전략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방안」 토론

학계와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분절성'을 한계로 지적해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부처가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물론 **각 부처가 고유의 핵심 가치와 전문 영역에 따라 올바른 역할 분담이 전제된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 간 협업 미흡으로 인해 정책 조율이나 사회문제 적시 대응에 한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부·처·청 중 어떤 형태의 전담 기구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조직 형태별 장단점과 한계로 인해 학계에서도 쉽사리 의견이 모이지 못했고 관련 법안도 여러차례 제출되었으나 실제 전담 기구 신설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특히 단속·심사·출입국 집행에 특화된 청(廳) 조직은 중장기 이민정책 기획·조정 기능에 한계를 지니고, 처(處)는 집행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모순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제시된 '차관급 본부 설치'는 집행 기능(심사, 체류 등)과 기획 기능을 단일 조직에서 모두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면서 기구 신설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차관급 본부 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외청으로 분리하기에는 모부처와의 정책 연계성이 높고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이나 대외적인 협상력이 강하게 요구될 때 설치된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차관급 본부 격상은 향후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과도기(징검다리)' 모델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차관급 본부는 분명 현행 체계보다 발전적인 형태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외부의 기대치와 상징성의 괴리이다. 출입국·이민정책을 둘러싸고

아주 오랫동안 전담 기구로서 청(廳), 처(處), 부(部)와 같은 '독립기관' 형태의 컨트롤타워를 요구해 왔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기관이 신설되면 현재 이민정책 추진체계가 갖는 다양한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는 다소 과도한 기대도 함께 존재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되더라도 법무부 내의 '본부' 수준에 머무른다면 외부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정책 기획과 집행의 실무적 차원에서는 실질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독립 전담 기구가 갖는 국가적 이민정책 선도의 상징성은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실질적인 '부처 간 조정기능'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 부처 기능 이관 없이 기존 조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타 부처와의 갈등 가능성을 낮추려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이는 역으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조직의 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고 부처 간 고질적인 협력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기능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단계적인 기능 조정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타 부처 기능 이관은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2023년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되었을 당시, 전문가들은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갈등과 행정적 비용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기능 이관을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은 존재한다**. 타 부처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업무일지라도 국가 전체 이민정책 관점에서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능 이관을 통해 본부로 통합해야 한다. 출입국·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각 부처가 새롭게 나누어 가져야 할 역할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부처 고유 업무와 가치에 맞는 기능 재설계**는 장기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본부 형태가 갖는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출입국 이민정책은 현장 집행력과 중장기 기획력이 모두 요구되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 내 차관급 본부는 앞서 언급한 '전략적 과도기' 체제로서 상당한 행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

다. 다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사권과 예산권을 온전히 갖추고 국가 인구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이다.

